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조치**¹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¹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 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9.13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리고 제9.13조제1항다호 및 제10.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와 제10.5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10.5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건설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2.3) 제9조 및 제10조</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9호, 2016.2.11) 제13조</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9호, 2016.2.12) 제2조 및 제3조</p> <p>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3589호, 2015.12.22) 제14조</p> <p>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918호, 2016.1.27) 제4조 및 제5조</p> <p>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5호, 2016.1.19) 제2조(별표 1)</p> <p>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47호, 2016.1.27) 제2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대여, 정비, 수리, 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3784호, 2016.1.19) 제21조</p> <p>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p> <p>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32호, 2015.9.25)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대여, 정비, 수리, 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3.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 수리, 판매,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2015.8.11)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4호, 2016.2.11)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94호, 2015.2.2) 제1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 판매, 정비, 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4.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담배사업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p> <p>담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9호, 2013.4.26) 제4조 및 제5조</p> <p>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p> <p>주세법(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8조부터 제10조까지</p> <p>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9조</p> <p>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1호, 2015.6.30)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63호, 2015.12.31)</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p> <p>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야 한다.</p> <p>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p>

5.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6호, 2016.9.22) 별표2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며,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6.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31호, 2016.12.2)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제1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한다.

7.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약사법(법률 제14926호, 2017.10.24) 제42조 및 제45조</p> <p>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제6조</p> <p>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11호, 2017.7.26) 제31조의2</p> <p>한약재 수급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0호, 2015.12.9) 제4조 및 제12조</p> <p>의료기기법(법률 제13698호, 2015.12.29) 제15조</p> <p>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1호, 2015.7.29) 제29조</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30호, 2015.5.18) 제6조</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350호, 2016.12.30) 제2조 및 제5조</p> <p>식품위생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36조 및 제37조</p> <p>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23조 및 제24조</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49호, 2016.1.4) 제36조(별표14)</p> <p>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4025호, 2016.2.3)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21조 및 제22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29조(별표10)</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14조 및 제15조</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2조</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68호, 2016.3.31) 제15조</p> <p>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20호, 2016.2.3) 제6조</p> <p>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236호, 2015.12.31) 제2조</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19호, 2016.2.3) 제6조 및 제6조의2</p> <p>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2.3) 제3조</p> <p>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2호, 2015.7.29) 제4조</p>
<p>유보내용</p>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도매업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를 포함한다) <p>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판매 및 보존(냉장) 나. 식품공급서비스 다. 식품검사서비스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또는 마. 화장품(기능성化妆품을 포함한다) 공급서비스 <p>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을 조절한다.</p> <p>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8. 분야	의약품소매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12.29) 제20조 및 제21조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73호, 2016.12.13) 제22조의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약품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할 수 없다.

9.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철도사업법(법률 제13688호, 2015.12.29)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13692호, 2015.12.29) 제9조 철도건설법(법률 제13490호, 2015.8.11) 제8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법률 제12995호, 2015.1.6) 제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주식의 100퍼센트를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를 포함한다)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00호, 2016.1.19)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09호, 2016.4.26)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4.21) 제11조 궤도운송법(법률 제13476호, 2015.8.11) 제4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제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택시와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보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해운법(법률 제13186호, 2015.2.3) 제24조 및 제33조</p> <p>해운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78호, 2015.12.31)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p> <p>도선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6조</p> <p>선박투자회사법(법률 제11756호, 2013.4.5) 제3조 및 제31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p> <p>선박투자회사 또한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p> <p>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이어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p> <p>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12.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 및 제135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14조의2,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
유보내용	<p><u>투자</u></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한다.</p> <p>가. 외국 국민</p> <p>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p> <p>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p> <p>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인은 해당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호부터 마호까지 열거된 인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p>

13.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사용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2
유보내용	<p><u>투자</u></p> <p>항공기사용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살포, 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항공순찰,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및 관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p>

14.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00호, 2016.1.19) 제36조 및 제3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4.21) 제73조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2016.1.27) 제3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65호, 2016.2.11) 제1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버스터미널운영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 제139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30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12호, 2016.1.19)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6호, 2016.1.7)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국내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쿠리어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6. 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823호, 2016.1.27)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5385호, 1997.8.28) 부칙 제4조 전파법(법률 제13012호, 2015.1.20) 제13조 및 제20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된다.</p> <p>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를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는, 기간통신서비스 허가가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p> <p>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를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의 경우,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그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의 경우, 한국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다음을 허용한다.</p> <p>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p> <p>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가 기간통신서비스 허가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p> <p>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p>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823호, 2016.1.27) 제5조제 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이다.</p> <p>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823호, 2016.1.27) 제5조제 3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다. 그리고</p> <p>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13586호, 2015.12.22)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	---

17. 분야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구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1.28) 제9조</p> <p>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2호, 2016.1.12) 제13조</p> <p>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73호, 2015.1.6) 제4조</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18호, 2013.8.6) 제27조</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632호, 2015.11.11)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3호, 2016.4.21) 제25조 및 제26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부동산중개서비스 또는 부동산감정평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18.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 리스, 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의료기기법(법률 제13698호, 2015.12.29) 제16조 및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1호, 2015.7.29) 제35조 및 제3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리스,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19. 분야	대여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00호, 2016.1.19) 제28조 및 제2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4.21)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대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양과학조사법(법률 제12091호, 2013.8.13)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10524호, 2011.4.4) 제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한국 국민 또는 한국 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21. 분야	전문직서비스 - 법률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변호사법(법률 제12887호, 2014.12.30)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및 제58조의2 법무사법(법률 제12885호, 2014.12.30)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공증인법(법률 제11823호, 2013.5.28)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 대한 투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p> <p>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p> <p>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p>

22.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자문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3898호, 2016.1.27)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08호, 2016.4.26) 제15조 및 제19조의2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4호, 2016.4.26) 제6조 및 제10조의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공인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한국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3.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변리사법(법률 제11962호, 2013.7.30)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p> <p>변리사 1인은 오직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p>

24.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인회계사법(법률 제13444호, 2015.7.24) 제2조, 제7조, 제12조 및 제2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15호, 2014.5.28) 제3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p> <p>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25.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세무사법(법률 제14045호, 2016.3.2)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 법인세법(법률 제13555호, 2015.12.15) 제60조 소득세법(법률 제13558호, 2015.12.15) 제70조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761호, 2009.8.24)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26.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관세사법(법률 제14036호, 2016.3.2)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8, 제17조의13, 제19조 및 제25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서비스 - 산업안전, 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62호, 2013.6.4)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 2016.2.17)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0호, 2016.2.17)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28.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건축사법(법률 제13472호, 2015.8.11) 제23조</p> <p>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제22조 및 제23조</p> <p>건축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2.11) 제13조</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3852호, 2016.1.27) 제21조</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33조</p> <p>기술사법(법률 제13705호, 2016.1.6) 제6조</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2016.1.19) 제9조</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제11조</p> <p>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671호, 2015.12.29) 제26조</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6호, 2016.5.17) 제44조</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12호, 2016.5.25) 제21조</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76호, 2015.2.3) 제16조</p> <p>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2.3) 제9조</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제9조</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44조</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p> <p>온천법(법률 제13401호, 2015.7.20) 제7조</p> <p>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918호, 2016.1.27) 제4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또는 조사 및 지도 제작 서비스(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서비</p>

	<p>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	--

29.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방송법(법률 제13341호, 2015.6.22) 제13조 및 제7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6호, 2016.1.6)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52호, 2015.12.31) 제14조 및 제44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 방송 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30.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인력공급 및 근로자파견 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직업안정법(법률 제13049호, 2015.1.20) 제19조 및 제33조</p> <p>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3호, 2016.5.3) 제21조 및 제33조</p> <p>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6.16) 제17조, 제18조 및 제36조</p> <p>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0호, 2014.3.18)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p> <p>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10호, 2015.12.30) 제2조 및 제3조</p> <p>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41호, 2015.12.30) 제3조 및 제5조</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37호, 2016.1.27) 제17조</p> <p>선원법(법률 제11024호, 2011.8.4) 제106조,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p> <p>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법률 제13272호, 2015.3.27) 제5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파견서비스(임시 파견)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투명성 목적상, 2013년 10월 29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대상 사업 유형을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자 및 「선원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해상업무 및 어업 관련 조직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선원관리사업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이어야 한다.</p> <p>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p>

31.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1.26) 제3조 및 제4조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95호, 2015.10.20) 제3조 및 제4조 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6호, 2015.9.24) 제3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분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32.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308호, 2015.5.18)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3호, 2016.1.22) 제12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 2016.1.22) 제7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 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33.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 14114호, 2016.3.29)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²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에 설치한 사무소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한국 항공기에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4.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고등교육법(법률 제14148호, 2016.5.29)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p> <p>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제28조</p> <p>사립학교법(법률 제14154호, 2016.5.29)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p> <p>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65호, 2013.7.22) 제9조의3</p> <p>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1조 및 제2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p> <p>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교육부장관은 의학·약학·수의학·한의학·의료기사 분야 및 유아·초등·중등 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p> <p>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만이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p>

35.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1.19)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12조</p> <p>평생교육법(법률 제14160호, 2016.5.29)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p> <p>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p> <p>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6호, 2016.9.22) 별표1</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으로 한정한다.</p> <p>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p> <p>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 대상으로 설립된 것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이어야 하며,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p>

36.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3042호, 2015.1.20)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10호, 2015.12.30) 제24조 및 제26조</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41호, 2015.12.30)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37. 분야	수의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의사법(법률 제13028호, 2015.1.20) 제4조,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민법(법률 제13125호, 2015.2.3) 제3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사무소를 한국 내에 설치한,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의 또는 수생 동물 질병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8.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서비스, 폐기물관리서비스, 대기오염처리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79호, 2016.1.27) 제62조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3411호, 2015.7.20)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47호, 2015.7.24)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874호, 2016.1.27) 제6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13892호, 2016.1.27)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54조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3534호, 2015.12.1) 제23조의7 지하수법(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29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3035호, 2015.1.20) 제28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분야	공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연법(법률 제13298호, 2015.5.18) 제6조 및 제7조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0호, 2016.5.17) 제4조 및 제6조 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2.25)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99호, 2013.10.10) 별표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한국 내에서 공연하도록 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0. 분야	뉴스통신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3호, 2012.11.20) 제4조 및 제10조 전파법(법률 제11712호, 2013.3.23) 제20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사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 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연합뉴스사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p>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외국 국민나.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

41.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12.29)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94호, 2015.9.25)
유보내용	<u>투자</u>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42.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20조 및 제29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p>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원어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p>

43.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양곡관리법(법률 제12964호, 2015.1.6) 제12조</p> <p>축산법(법률 제14481호, 2016.12.27) 제30조 및 제34조</p> <p>종자산업법(법률 제13385호, 2015.6.22) 제42조</p> <p>사료관리법(법률 제14481호, 2016.12.27) 제6조</p> <p>인삼산업법(법률 제13360호, 2015.6.22) 제20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p> <p>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6호, 2016.9.22) 별표2</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90호, 2016.12.2)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p> <p>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8호, 2016.12.21)</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p> <p>「농업협동조합법」상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p> <p>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 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p>

44. 분야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³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0호, 2016.3.29) 제168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37호, 2016.3.11) 제187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p> <p>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2호, 2015.7.13) 별표2</p> <p>공공적 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p> <p>증권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3호, 2007.1.19) 제7-6조</p>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p>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³ 부속서 II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5.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⁴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0호, 2016.3.29) 제168조 한국가스공사정관(2015.6.23) 제11조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⁴ 부속서 II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6.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제19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내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 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와 제10.5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10.5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2016)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7)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p> <p>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p> <p>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p>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0호, 2016.3.29) 제168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제18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p> <p>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p>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p>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3. 분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농지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제6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p> <p>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p> <p>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외국 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토지는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3)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p>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4.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 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6. 분야	국가 소유의 국가 전자/정보 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 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8.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p> <p>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p> <p>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p> <p>다. 부록 II-1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1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p> <p>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10.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p> <p>라. 철도 운송</p> <p>한국은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통신서비스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0. 분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다음의 환경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p> <p>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과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11. 분야	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및 가스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와 같이 원자력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9.9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p>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12.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p> <p>나. 곡물, 육류, 가금, 곡분, 인삼, 홍삼 및 비료에 대한 도매서비스, 그리고</p> <p>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p>

13.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4.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서비스 및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도로화물운송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는 제외한다), 내륙수운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 (제9.4 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택시서비스 및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과 쿠리어서비스와 연관된 도로운송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내륙수운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5. 분야	운송서비스 - 저장 및 창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농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6.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비독점우편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13584호, 2015.12.22) 병역법(법률 제13425호, 2015.7.24)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6085호, 2015.2.3)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그 밖의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p> <p>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p> <p>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거,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p>

17. 분야	커뮤니케이션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 (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제20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19.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 (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내국민 지위를 부여한다.

20.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제27조 및 제4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제10조 및 제1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 2012.8.1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5호, 2008.12.31)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1. 분야	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2.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지적 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3.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4. 분야	사업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 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5.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6.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2151호, 2010.5.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7.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 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8.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9.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p>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p> <p>문화재보호법(법률 제11228호, 2012.1.26)</p> <p>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82호, 2011.7.21)</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p> <p>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및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30. 분야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1.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기존의 조치	관광진흥법(법률 제12406호, 2014.3.11) 제5조, 제21조 및 제28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154호, 2014.1.1)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2348호, 2014.1.28)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1호, 2014.7.28) 제28조 및 제30조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4306호, 2016.12.2) 제3조 및 제48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43호, 2015.2.3) 제6조 경륜·경정법(법률 제12688호, 2014.5.28) 제4조, 제19조 및 제2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2013.8.6)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은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p>

32. 분야	외국전문직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외국 공인회계사 및 외국 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현지주재 의무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요건에 대한 제한</p> <p>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한국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p> <p>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p> <p>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p> <p>제1항에도 불구하고,</p> <p>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협정의 다른 쪽 당사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연계 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자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다른 쪽 당사국 법무회사(로펌)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다른 쪽 당사국 내에 위치한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p> <p>한국은 회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p> <p>내국민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그리고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하여,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 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p>
--	--

33. 분야	사업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34. 분야	운송 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p> <p>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3.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p>

부록 II-1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p>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사회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학제 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정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시장조사 및 대중여론조사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광업 부수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포장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컨벤션대행서비스 이외의 컨벤션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p>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빌딩청소서비스(CPC 874*, 다만 87409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환경자문서비스(CPC 9409*)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p>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p> <p>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서비스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서비스 제외</p> <p>여행대행서비스</p> <p>관광객안내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p>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p> <p>기타 - 게임서비스(CPC 964**)</p>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부속서 II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1.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리고 제11.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1은 양 당사국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제1항(예외)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10.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1-가(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1.5조제1항(국경 간 무역) 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¹
3. 제11.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한국은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²

¹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²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각주는 엘살바도르와 파나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업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제91조 및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제40조
유보내용	<p>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거래자나 투자중개자의 2명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p> <p>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 수,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그리고 대출의 대가로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 관행과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함을 밝힌다.</p>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4450호, 2016.12.20)</p> <p>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079호, 2016.3.22)</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3738호, 2016.1.6)</p> <p>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4310호, 2016.12.2)</p> <p>선원법(법률 제11024호, 2011.8.4)</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76호, 2016.2.3)</p> <p>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3751호, 2016.1.7)</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921호, 2016.1.27)</p> <p>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3754호, 2016.1.7)</p> <p>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4068호, 2016.3.2)</p> <p>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2829호, 2014.10.15)</p> <p>항공운송사업 진흥법(법률 제12655호, 2014.5.21)</p> <p>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 2016.12.2)</p>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82호, 2016.1.27)</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694호, 2015.12.29)</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3323호, 2015.5.18)</p> <p>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805호, 2016.1.19)</p> <p>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3543호, 2015.12.1)</p> <p>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3374호, 2015.6.22)</p> <p>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325호, 2016.12.2)</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4240호, 2016.5.29)</p> <p>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929호, 2016.1.27)</p> <p>전자서명법(법률 제12762호, 2014.10.15)</p> <p>변호사법(법률 제14056호, 2016.3.2)</p>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9호, 2016.3.22)</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03호, 2016.12.20)</p> <p>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750호, 2016.1.7)</p> <p>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41호, 2016.12.20)</p> <p>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2016.12.2)</p> <p>공인회계사법(법률 제14119호, 2016.3.29)</p> <p>관광진흥법(법률 제13958호, 2016.2.3)</p> <p>궤도운송법(법률 제14088호, 2016.3.22)</p> <p>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p> <p>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8호, 2016.3.29)</p> <p>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p> <p>세무사법(법률 제13796호, 2016.1.19)</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3852호, 2016.1.27)</p> <p>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8호, 2016.1.27)</p> <p>우주손해배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p> <p>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법률 제13097호, 2015.1.28)</p> <p>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6.23)</p> <p>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p> <p>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3호, 2012.2.10)</p> <p>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3768호, 2016.1.19)</p>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1호, 2013.5.28)</p>
--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0호, 2016.3.22)</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42호, 2016.5.29)</p> <p>주택법(법률 제14344호, 2016.12.2)</p> <p>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093호, 2016.3.22)</p> <p>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p> <p>해운법(법률 제14117호, 2016.3.29)</p> <p>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914호, 2016.1.27)</p>
<p>유보내용</p>	<p>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1-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p>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유보내용	<p>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³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p> <p>2. 투명성 목적상,</p> <p>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p> <p>나. 자연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p> <p>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p> <p>라.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체 또는 관련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이거나 그 금융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p>

³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등급으로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제58조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24조의9 및 부칙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6-45호, 2016.12.20) 제5조의4 및 제11조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한국에서 각각의 지점을 설치하려면 개별 면허가 필요하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78조, 제373조, 제379조 및 제386조
유보내용	한국거래소 및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기타 대체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166조 및 제294조부터 제323조까지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결제기관으로서 또는 한국의 예탁자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323조의2, 제323조의3, 제323조의10 및 제378조
유보내용	<p>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또는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중앙청산기구만이 증권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서비스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제184조
유보내용	비전문 투자자(일부 전문투자자 ⁴ 를 포함한다)가 외화표시증권 및 외국 증권시장이나 외국 파생상품시장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서 면허를 받은 투자중개자를 통하여 거래한다.

⁴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3)의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제62조 및 제63조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25조 및 제2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6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제65조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들여와 한국에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국내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 또는 대출 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들여와 한국에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국내 지점이 수행하는 업무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금융투자회사의 실체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4457호, 2016.12.20) 제7조</p> <p>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제6조</p> <p>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4127호, 2016.3.29) 제5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2014.12.30) 제355조</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6호, 2015.3.11) 제5조</p> <p>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2016.3.2) 제9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2014.12.30) 제254조, 제258조 및 제263조</p>
유보내용	<p>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아. 채권평가회사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132호, 2016.3.29) 제30조
유보내용	한국에서 특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4122호, 2016.3.29)</p> <p>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7.31)</p> <p>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4134호, 2016.3.29)</p> <p>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481호, 2016.12.27)</p> <p>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242호, 2016.5.29)</p>
유보내용	<p>한국은</p> <p>가. 다음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주택금융공사 4)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5) 수산업협동조합 <p>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4)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공공자산 및 특정조세의 면제

1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2016.3.2) 제9조
유보내용	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2절

1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p>한국은, 한국 내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1-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p>

1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소유 또는 정부 지배 기관들의 의무 및 배상 책임에 대한 계속적 보증 또는 한시적 추가 보증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관들의 정부 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및/또는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2014.12.30)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 투자자에 의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 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1)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 보전을 보장하고, (2) 공모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종의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할 것을 보장한다.

1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4134호, 2016.3.29)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1.19)
유보내용	한국은 주택금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좌와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부록 III-1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4조와 불합치하다고 해석되지 아니할 것이다.

- (1) 한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 (2)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및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 (3) 한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 (4)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약식 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 (5)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영에 대한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 투자거래자 또는 투자중개자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6)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7) 한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8)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법」 제38조, 「보험업법」 제105조)
- (9) 한국의 비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그리고 제7-36조부터 제7-39조까지)
- (10) 한국은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 밖의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은행법」 제30조,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1조 및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다음의 조치는 제11.10조제1항(예외)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11.2조(내국민 대우)는 한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10조제1항의 범위에 해당될 것이다.

-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9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 나. 외국보험사의 한국 내 지점은 한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한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7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속서 I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코스타리카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코스타리카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제3항에 의거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러한 판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코스타리카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와 관련하여 이 부속서에서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4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 조치를 지칭한다.

7. 본 부속서의 조치 목록은 부속서 II에 따라 해당 조치 또는 그러한 조치의 일부 적용에 적용될 수 있는 향후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8. 천연 자원(석탄과 탄화수소를 포함한다)의 채굴, 발전,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정제, 수렵, 임업 및 벌목, 그리고 어업은 본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3284호, 1964.4.30, 상법(Código de Comercio) 제226조</p> <p>법률 제218호, 1939.8.8, 협회법(Ley de Asociaciones) 제16조</p> <p>행정부령 제29496-J호, 2001.4.17, 협회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 Asociaciones) 제34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해외 소재 협회 및 코스타리카의 영역 내에 지점을 소유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은, 그러한 지점의 영업을 위해 코스타리카 내에서 위임장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p>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043호, 1977.3.2, 해상-육상 구역법(Ley sobre la Zona Marítimo Terrestre)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1조, 그리고 제3장 및 제6장</p> <p>법률 제2825호, 1961.10.14, 토지 및 간척사업법(Ley de Tierras y Colonización - ITCO INDER) 제2장</p> <p>행정부령 제39688호, 2016.4.22, 국경지역 양허 승인에 관한 규정(Reglamento a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en franjas fronterizas) 제1장 및 제2장</p> <p>법률 제9221호, 2014.3.27, 해안도시구역 선포 및 육상 구역의 이용 및 활용 제도에 관한 기본법(Ley marco para la declaratoria de zona urbana litoral y su régimen de uso y aprovechamiento territorial) 제1조, 제2조 및 제2장</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 법규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상-육상 구역 내에서 진행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 또는 활동에 대해서도 양허가 요구된다.¹</p> <p>다음은 해상-육상 구역에 대한 양허를 승인받거나 보유할 수 없다. (가) 5년 이상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지 아니한 외국 국민, (나)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 (다) 해외에 소재한 기업, (라) 외국 국민만으로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기업, 또는 (마) 외국인이 자본금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기업</p> <p>해상-육상 구역 내에서, 만조선에서 첫 50미터까지의 구역 및 만조선과 만조선 사이의 구역에는 양허가 승인되지 아니한다.</p> <p>해상-육상 구역 내 양허를 소유한 기관 또는 기관의 파트너는 지분이나 주식을 외국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p> <p>양허를 소유한 코스타리카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해상-육상 구역 내 관광 개발 또는 그 개발에 대한 접근에 개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 기관의 경우 개발자본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코스타리카인에게 귀속되는 관광기업에 한정하여 개입이 허용된다.</p> <p>코스타리카 법규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안도시구역에서 진행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 또는 활동에 대해서도 양허가 요구된다.² 해안도시구역</p>

¹ 해상-육상 구역은 평균 만조선에서 수평으로 측정된, 코스타리카의 대서양 및 태평양 해안선 전체를 따라 위치한 폭 200미터의 해역을 의미한다. 또한 해상-육상 구역은 코스타리카 영해 내에 위치한 모든 도서(島嶼)를 포함한다.

	<p>내 양허는 도시규제계획 및 법률 제9221호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해안도시구역으로 선포되기 전 이미 양허를 소유한 양허권자 및 임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p> <p>다음은 해안도시구역 내 양허를 승인 받거나 보유할 수 없다. (가) 최소 5년 동안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지 아니한 외국 국민, (나) 이주자 신분이 합법적이지 아니한 외국 국민, (다) 외국에 소재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자본 지분 또는 주식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기업. 해당 비율은 양허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해안도시구역 내 양허를 보유한 기업은 지분 구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사유지 및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를 제외하고, 니카라과 및 파나마와 접한 코스타리카 국경으로부터 폭 2,000미터 이내의 모든 토지는 양도 불가능하며 권리 양도 또는 신고를 통한 취득이 불가능하다. 자연인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양허를 취득하려는 외국 국민은 코스타리카 영주권을 소유하여야 하며 이민외무총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양허를 취득하려는 법인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 국민이 지분, 주식 또는 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그 법인은 양허를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이 구성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은 양허를 취득할 수 없다. 외국 국민이 자본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은 이러한 자연인이 코스타리카 영주권을 소유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민외무총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p>
--	---

² 해안도시구역은 도시 지역으로도 간주되는 해안 지역이며, 과거 권한 있는 당국이 해안도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다.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762호, 1998.4.14,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사업 양허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Concesión de Obras Públicas con Servicios Públicos) 제4장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공공사업계약에 대한 양허 및 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정의된 공공서비스계약을 수반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양허의 경우, 고지 원칙에 합치된 선발 기준상 동등하다면 코스타리카 입찰인이 외국인에 우선하여 선정된다. 계약권자는 양허 계약을 체결할 국영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를 구성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해당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p>

4. 분야	전문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221호, 1991.4.6, 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47조</p> <p>행정부령 제22688-MAG-MIRENEM호, 1993.11.22, 코스타리카 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de Costa Rica) 제6조, 제7조,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p> <p>행정부령 제29410-MAG호, 2001.3.2, 감정인 및 조사관의 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 등록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Registro de Peritos-Tasadores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제6조, 제20조 및 제22조</p> <p>법률 제5230호, 1973.7.2, 지질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Geólogos) 제3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p> <p>행정부령 제6419- MEIC호, 1976.10.18, 코스타리카 지질학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Geólogos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및 제37조</p> <p>법률 제15호, 1941.10.29, 약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armacéuticos) 제2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p> <p>행정부령 제3503-S호, 1974.2.6, 코스타리카 약사 전문가협회에 관한 일반 기본규정 또는 내부 규정(Reglamento General Orgánico o 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Farmacéuticos de Costa Rica) 제2조 및 제6조</p> <p>2010.10.27, 코스타리카 약사 전문가협회 제약전문분야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pecialidades Farmacéuticas del Colegio de Farmacéuticos de Costa Rica) 제4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p> <p>법률 제5784호, 1975.8.19, 코스타리카 치과 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irujanos Dentistas de Costa Rica)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p> <p>법률 제3663호, 1966.1.10, 엔지니어 및 건축가 연합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52조</p> <p>행정부령 제3414-T호, 1973.12.3, 엔지니어 및 건축가 연합 전문가협회에</p>

	<p>관한 일반 내부 규정(Reglamento Interior General de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37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60조</p> <p>2005.3.7, 엔지니어 및 건축가 연합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특별규정(Reglamento Especial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7조 및 제8조</p> <p>법률 제1038호, 1947.8.19, 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 설립법(Ley de Creación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제3조, 제4조, 제12조 및 제15조</p> <p>행정부령 제13606-E호, 1982.5.5, 코스타리카 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및 제30조</p> <p>규정 제9호, 2010.5.25, 코스타리카 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의 설립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Trámite y Requisitos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Costa Rica) 제3조</p> <p>법률 제3455호, 1964.11.14, 수의사 전문가협회법(Ley del Colegio de Médicos Veterinarios)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27조</p> <p>행정부령 제19184-MAG호, 1989.7.10, 수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Veterinarios)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4조</p> <p>법률 제2343호, 1959.5.4, 코스타리카 간호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Enfermeras de Costa Rica)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조</p> <p>행정부령 제37286호, 2012.4.19, 코스타리카 간호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Enfermeras de Costa Rica) 제1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5조 및 제158조</p> <p>규정 제2044호, 2011.7.7, 코스타리카 간호사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Incorporación del Colegio de Enfermeras y Enfermeros de Costa Rica) 제11조</p> <p>법률 제7764호, 1998.4.17, 공증인법(Código Notarial) 제3조 및 제10조</p> <p>법률 제13호, 1941.10.28, 변호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bogados y Abogadas de Costa Rica)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p> <p>행정부령 제20호, 1942.7.17, 변호사 전문가협회 내부규정(Reglamento Interior del Colegio de Abogados) 제1조</p> <p>협의 제2008-45-034호, 2008.12.9, 변호사의 변호사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안내서(Manual de Incorporación de los Licenciados en Derecho al Colegio</p>
--	--

	<p>de Abogados) 제2조, 제7조 및 제8조</p> <p>법률 제1269호, 1951.3.2, 자문회계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2조 및 제4조</p> <p>행정부령 제3022호, 1973.5.21, 코스타리카 자문회계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5조 및 제39조</p> <p>규정 제90-1호, 2004.5.18, 코스타리카 자문회계사 전문가협회의 설립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Trámite y Requisitos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3조</p> <p>법률 제8412호, 2004.4.22, 화학공학자 및 관련 전문가협회 기본법 및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61조, 제67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2조</p> <p>행정부령 제34699-MINAE-S호, 2008.4.15,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화학공학자 및 관련 전문가협회 기본법 및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법률 제8412호, 2004.4.22) 제2장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l Título II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Ley No. 8412 del 22 de abril de 2004, Normativ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6장</p> <p>행정부령 제35695-MINAE호, 화학공학자 및 관련 전문가협회 기본법 및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법률 제8412호) 제1장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l Título I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de Costa Rica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Ley No. 8412) 제1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45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8조, 제161조, 제17장, 제19장, 제21장 및 제24장</p> <p>법률 제3019호, 1962.8.9,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p> <p>행정부령 제23110-S호, 1994.3.22,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10조</p> <p>행정부령 제2613-SPSS호, 1972.11.3, 의학 세부분야 전문가 및 외과 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 규정 제1조 및 제 4조</p> <p>법률 제7559호, 1995.11.9, 보건학 전문가의 의무사회서비스(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los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p>
--	---

	<p>법률 제9272호, 2014.10.7, 법률 제7559호 보건학 전문가의 의무사회서비스(1995.11.9)에 대한 개정(Reforma de la Ley No. 7559, 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de 9 de noviembre de 1995) - 단일 조항</p> <p>규정 제9호, 2012.9.19,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가 승인한 의과학 기술자에 관한 규정(Normativa de Tecnólogos en Ciencias Médicas autorizados por 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4조, 제7조 및 제44조</p> <p>규정 제12호, 2007.2.12, 코스타리카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가 승인한 의과학 관련 전문가 지부에 관한 규정(Normativa del Capítulo de Profesionales Afines a las Ciencias Médicas autorizados por 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de Costa Rica) 제14조</p> <p>법률 제3838호, 1966.12.19, 코스타리카 검안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Optometristas de Costa Rica) 제6조 및 제7조</p> <p>법률 제4420호, 1969.9.22, 코스타리카 기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p> <p>행정부령 제32599호, 2005.6.13, 코스타리카 기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1조, 제3조, 제47조 및 제48조</p> <p>법률 제7106호, 1988.11.4,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Políticas y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제26조 및 제29조</p> <p>행정부령 제19026-P호, 1989.5.31,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Políticas y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제1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59조</p> <p>법률 제4288호, 1968.12.20, 생물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Biólogos) 제6조 및 제7조</p> <p>행정부령 제39호, 1970.5.6, 코스타리카 생물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Biólogos de Costa Rica)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p> <p>법률 제9148호, 2013.7.9, 코스타리카 사서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Bibliotecología de Costa Rica) 제3조 및 제5조</p> <p>규정 제0-A호, 2015.2.23, 코스타리카 사서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Bibliotecología de Costa Rica) 제8조, 제11조 및 제87조</p>
--	--

	<p>법률 제7537호, 1995.8.22, 컴퓨터 및 정보과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Informática y Computación)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p> <p>행정부령 제35661-MICIT호, 2009.11.18, 컴퓨터 및 정보과학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de Informática y Computación) 제1조, 제22조 및 제23조</p> <p>법률 제8142호, 2001.11.5, 공인 통번역법(Ley de Traducciones e Interpretaciones Oficiales) 제6조</p> <p>행정부령 제30167-RE호, 2002.1.25, 공인 통번역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 Traducciones e Interpretaciones Oficiales) 제10조</p> <p>법률 제7105호, 1988.10.31, 경제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p> <p>행정부령 제20014-MEIC호, 1990.9.19, 코스타리카 경제학 전문가협회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de Costa Rica)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p> <p>규정 제77호, 2009.6.20, 코스타리카 경제학 전문가협회 가입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Admisión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de Costa Rica)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p> <p>행정부령 제24686호, 1995.9.19, 자문기관의 전문감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Fiscalización Profesional de Entidades Consultoras) 제2조 및 제5조</p> <p>법률 제7503호, 1995.5.3, 물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ísicos) 제6조 및 제10조</p> <p>행정부령 제28035-MINAE-MICITT호, 1999.4.14, 물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ísicos)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제21조</p> <p>법률 제8863호, 2010.9.18, 오리엔테이션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Orientación)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제10조</p> <p>법률 제6144호, 1977.11.28, 코스타리카 심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Profesional de Psicólogos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p> <p>코스타리카 심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Profesional de Psicólogos de Costa Rica)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정기총회 제3세션에서 승인됨(1979.3.9)</p>
--	---

	<p>2017.5.20, 코스타리카 심리학 전문가 편입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la Incorporación de Profesionales en Psicología) 제18조</p> <p>2010.5.26, 심리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pecialidades Psicológicas)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18조</p> <p>법률 제8676호, 2008.11.18, 영양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Nutrición) 제2조, 제7조, 제11조 및 제13조</p> <p>협정 제01-2009호, 2009.9.23, 코스타리카 영양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Nutrición de Costa Rica) 제2조, 제3조, 제9조 및 제10조</p> <p>법률 제3943호, 1967.9.6, 사회복지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Trabajadores Sociales) 제2조 및 제12조</p> <p>행정부령 제26호, 1969.7.15, 사회복지사 전문가협회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l Colegio de Trabajadores Sociales) 제14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p> <p>법률 제7912호, 1999.9.21, 지압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Quiropráctica) 제7조</p> <p>행정부령 제28595-S호, 2000.3.23, 지압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Quiropráctica) 제5조, 제8조 및 제15조</p> <p>행정부령 제25068-8호, 1996.3.21, 보건학 전문가의 의무사회서비스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los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p> <p>법률 제8831호, 2010.4.28, 코스타리카 범죄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riminología de Costa Rica)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p> <p>규정 제40010-JP호, 2016.9.12, 코스타리카 범죄학 전문가협회 내부규정(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riminología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3조</p> <p>법률 제4770호, 1972.10.13, 인문, 철학, 과학 및 예술 학사 및 교수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y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3조, 제4조 및 제7조</p> <p>규정 제91호, 1999.11.13, 인문, 철학, 과학 및 예술 학사 및 교수 전문가협회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y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32조 및 제33조</p>
--	--

	<p>규정 제96호, 2008.8.28, 인문, 철학, 과학 및 예술 학사 및 교수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안내서(Manual de Incorporación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p> <p>법률 제771호, 1949.10.25, 미생물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icrobiólogos) 제2조 및 제8조</p> <p>행정부령 제12호, 1957.9.30, 미생물학자 전문가협회 내부 규정(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Microbiólogos) 제17조, 제79조 및 제80조</p> <p>행정부령 제21034-S호, 1992.1.28, 미생물학 및 임상화학 서비스 법규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tatuto de Servicios de Microbiología y Química Clínica) 제63조</p> <p>법률 제8974호, 2011.8.4, 코스타리카 사회학 전문가협회 설립(Creación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Sociología de Costa Rica) 제3조, 제9조, 제30조, 제37조 및 제39조</p> <p>행정부령 제38129-MP호, 코스타리카 사회학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Sociología de Costa Rica) 제3조 및 제8조</p> <p>법률 제8989호, 2011.9.13, 치료사 전문가협회법(Ley del Colegio de Terapeutas) 제8조, 제9조, 제11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p> <p>행정부령 제37562호, 2013.1.8, 의료 전문분야 및 하위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pecialidades y Subespecialidades Médicas) 제 7조</p> <p>행정부령 제37717-S호, 2013.1.17, 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Maestrías y Doctorados Académicos en las Áreas de Ciencias Médicas) 제8조</p> <p>행정부령 제19301호, 1989.11.13, 경력 조산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Parteras Empíricas) 제2조</p> <p>금융감독원 규정 제32-10호, 2010.12.3, 외부 감사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Auditores Externos) 제5조, 제6조 및 제7조</p>
<p>유보내용</p>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의 각 전문가 협회에 적법하게 소속된 전문직서비스 공급자만이 코스타리카 영역 내에서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전문직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p> <p>공인회계사, 약사, 지질학자, 엔지니어 및 건축가, 내과 및 외과 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증인, 치과 의사, 검안사, 기자, 간호사, 의료 및 수술 기사, 그리고 의학 세부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전문가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이 활동 허가를 받은 자국의 관할권 내 동일한 상황에서 코스타리카 국민이 전문직서비스를 수행</p>

	<p>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p> <p>공인회계사, 약사, 지질학자, 사회학자, 농경기술자(임업 또는 농·축산업 감정인 및 조사관을 포함한다), 내과 및 외과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기자, 의료 및 수술 기사, 의학 세부분야, 컴퓨터 및 정보과학, 그리고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전문가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가입 신청 시점에 코스타리카 최소 거주 연한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주 신분이 코스타리카 거주자이어야 한다. 최소 거주 연한은 전문가협회마다 상이하나, 통상 2년에서 5년 이내이다.</p> <p>변호사, 공증인, 엔지니어 및 건축가, 간호사, 화학자, 화학 엔지니어 및 관련 세부분야, 생물학자, 사서, 심리학자, 정치학자, 국제관계 전문가, 물리학자, 경제학 전문가, 범죄학자, 과학 및 문학 교수, 그리고 자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전문가협회에 가입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가입 신청 시점의 이주 신분이 코스타리카 거주자이어야 한다.</p> <p>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와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의 설립은 국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조산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의 경우, 승인 신청 시점에 국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p> <p>코스타리카인만이 건축가 및 엔지니어 전문가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p> <p>해외에 소재한 그룹 또는 복합금융회사의 일부인 기업에 대한 감사의 경우, 그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감사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각 코스타리카 전문가 협회에 해당하는 전문가 등록부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규제기관의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록부에도 등록되고 활동하여야 한다. 나) 코스타리카에 대표사무소를 둔, 국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여야 한다.</p> <p>공증인으로서 활동하려면, 코스타리카에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한다.</p> <p>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에 적법하게 등록된 코스타리카 전문직 종사자만이 코스타리카에서 운영되는 농업 과학 분야의 컨설팅 업체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총 전문 컨설팅 자문 시간의 50퍼센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함이다.</p> <p>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관의 후원으로 코스타리카에서 진행되는 농업 과학 분야의 컨설팅 또는 자문 업무는 전문가협회에 등록된 코스타리카 국민이 외국 국민과 공동으로 수행한다.</p> <p>외국 기업은 코스타리카 전문직 종사자 또는 코스타리카 사무소를 통한 경우에만 공인회계사서비스를 광고 및 수행할 수 있다.</p> <p>사회학 분야의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 및 약학,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는 코스타리카의 전문가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며 코스타리카 국적의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부족하다고 공표된 경우에만 코</p>
--	--

	<p>스타리카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에 고용될 수 있다.</p> <p>외국인 기자는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코스타리카 내의 사건을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건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기자협회 이사회의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모든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미생물학자, 약사, 간호사, 영양사 및 심리학자는 보수를 받고 1년간 진행하는 의무사회서비스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p> <p>의무사회서비스 이행을 위한 자리는 추첨으로 배정한다. 자리가 충분하여 모든 지원자가 의무사회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자리의 배정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는 외국 국민인 지원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p> <p>추첨으로 결정하는 자리의 수가 지원자 수보다 적은 경우, 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에게 추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선택권은 자리 선택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원자 수가 부족한 자리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추첨에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 수가 부족한 자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자리 추첨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한다.</p> <p>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가 선택을 완료한 이후에도 자리가 부족한 경우, 외국 국민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p> <p>상기 명시된 각 전문직 범주에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의무사회서비스 요건은 임시 전문직 활동에 대하여 유예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전문직서비스 공급자가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의학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치과 의사는 그러한 정부 기관에 고용된다.</p> <p>청력 관련 기관 소유주는 신분증 또는 법인증명서를 소유하여야 한다.</p>
--	--

5. 분야	육상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행정부령 제31363-MOPT호, 2003.6.2, 화물자동차의 중량 및 규모에 따른 도로 순환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Circulación por Carretera con base en el Peso y las Dimensiones de los Vehículos de Carga) 제69조 및 제71조</p> <p>행정부령 제15624-MOPT호, 1984.8.28, 자동차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Transporte Automotor de Carga Local)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기업만이 코스타리카 영역 내 두 지점 간의 동력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코스타리카 국민이 자본의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나)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권이 코스타리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p> <p>외국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트랙터 트레일러는 코스타리카 영역 내에서 상품을 운송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중미 국가에 등록된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트랙터 트레일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국제 복합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코스타리카 내에서 컨테이너 및 트랙터 트레일러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6. 분야	관광 가이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31030-MEIC-TUR호, 2003.1.17, 관광 가이드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os Guías de Turismo) 제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거주자만이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7. 분야	여행사 및 관광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339호, 1973.8.23, 여행사 규제법(Ley Reguladora de las Agencias de Viajes) 제8조</p> <p>법률 제6990호, 1985.7.15, 관광개발장려법(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제6조 및 제7조</p> <p>법률 제8724호, 2009.7.17, 농촌관광진흥법(Fomento del Turismo Rural Comunitario) 제1조, 제4조 및 제12조</p> <p>행정부령 제24863-H-TUR호, 1995.12.5, 관광개발장려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제1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p> <p>행정부령 제25148-H-TUR호, 1996.3.20,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차량 대여 규제(Regula Arrendamiento de Vehículos a Turistas Nacionales y Extranjeros) 제7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기초하여 코스타리카 내 영업허가를 받은 여행사 수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코스타리카는 국제수지에 대한 기여도, 국내 원자재 및 투입물의 사용,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가 관광 산업의 현대화 또는 다변화, 국내외 관광 수요 증진, 그리고 그 밖의 분야에 반영된 이익을 기초로 하여, 관광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법인 또는 농촌 자율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기업만이 농촌 관광 활동(rural community tourism activities)을 진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된다.</p> <p>농촌 관광 분야의 이익과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는 경우, 그 기업이 관광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p>

8. 분야	운송서비스 - 관세사 - 보조 관세사 - 세관 운송 대리인 - 그 밖의 공공 기능 세관 보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557호, 1995.10.20, 관세일반법(Ley General de Aduanas)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p> <p>행정부령 제25270-H호, 1996.6.14, 관세일반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Aduanas) 제77조, 제78조 및 제113조</p> <p>행정부령 제38998호, 2015.2.24, 코스타리카의 신뢰 가능한 무역을 위한 세관촉진프로그램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Programa de Facilitación Aduanera para el Comercio Confiable en Costa Rica) 제2조, 제7조 및 제12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에 법률 대리인 및 본사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업만이 세관 운송 대리인, 국제 화물 대리인, 세관 수탁인 또는 그 밖의 공공 기능 세관 보조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국민만이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다.</p> <p>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고 「코스타리카의 신뢰성 있는 무역을 위한 세관촉진프로그램(Programa de Facilitación Aduanera para el Comercio Confiable en Costa Rica, PROFAC)」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코스타리카 관세영역에 소재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p>

9. 분야	과학, 연구 및 스포츠 서비스 농업, 축산업, 양식업, 벌목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788호, 1998.4.30, 생물다양성법(Ley de Biodiversidad) 제7조 및 제63조 법률 제7317호, 1992.10.30, 야생동물보호법(Ley de Conservación de la Vida Silvestre) 제2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 행정부령 제32633-MINAE호, 2005.3.10, 야생동물보호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Conservación de la Vida Silvestre) 제5장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에서 과학 연구 및 생물자원탐사 ³ 서비스를 생물다양성 ⁴ 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해외 소재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법률 대리인을 지정한다. 과학적 또는 양식 목적의 종(種) 수집, 과학적 목적의 수렵 및 과학적 또는 양식 목적의 어업에 대해 발급된 면허는 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최대 1년간 유효하며,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다. 코스타리카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보다 낮은 면허 취득 수수료를 납부한다.

³ 생물자원탐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화합물, 유전자, 단백질, 미생물, 그리고 생물다양성에서 발견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제 가치를 지닌 그 밖의 제품에 대한 조직적 탐색, 분류 및 조사를 포함한다.

⁴ 생물다양성은 각각의 종(種) 내, 종과 종 사이, 그리고 그 일부로서 존재하는 생태계 내에서의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육지, 대기, 해양, 수생 또는 그 밖의 생태학적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의 가변성을 포함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지식, 혁신, 그리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제 가치를 지니고 유전적이고 생화학적인 자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또는 독자적인 등록 시스템에 의해 보호를 받는(또는 받지 아니하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인 전통 관습과 같은 무형의 요소를 포함한다.

10. 분야	자유지역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210호, 1990.11.23, 자유지역 제도법(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제 22조</p> <p>행정부령 제34739-COMEX-H호, 2008.8.29, 자유지역 제도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제71조 및 제13장</p>
유보내용	<p><u>투자</u></p> <p>코스타리카 자유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총 매출액의 최대 25퍼센트까지 코스타리카 관세영역에 반입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 및 서비스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의 최대 50퍼센트까지 관세영역에 반입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자유지역에 설립되어, 수출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비전통적 상품 및 제품을 단순 처리, 재포장 또는 재유통하는 비제조 수출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의 어떤 부분도 관세영역에 반입될 수 없다.</p>

11. 분야	뉴스통신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32599호, 2005.6.13, 코스타리카 기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3조, 제47조 및 제48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국적의 기자는 코스타리카 거주자인 경우에만 코스타리카 내의 사건을 취재할 수 있다.</p> <p>기자 전문가협회 이사회는 비거주 외국 국민에게 최대 1년간 코스타리카 내 사건을 취재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는 기자 전문가협회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상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기자 전문가협회가 코스타리카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협회는 적합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비거주 외국 국민에게 기자가 대표하는 외국 매체를 위해 사건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 1개월 동안 유효하다.</p>

12. 분야	관광 마리나 및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744호, 1997.12.19, 관광 마리나 및 정박지 양허와 운영에 대한 법률(Ley de Concesión y Operación de Marinas y Atracaderos Turísticos) 제1조, 제5조, 제12조 및 제21조</p> <p>행정부령 제38171-TUR-MINAE-S-MOPT호, 2013. 10. 17, 관광 마리나 및 정박지 양허와 운영에 대한 법률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 Concesión y Operación de Marinas y Atracaderos Turísticos) 제29조, 제67조 및 제68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관광 마리나 또는 도크 시설 개발을 위한 양허를 취득하려면, 주사업장이 해외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코스타리카에 설립되어야만 한다. 관광 마리나에 대한 양허 승인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따른다.</p> <p>외국 국민의 경우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코스타리카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마리나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외국 선박에는 코스타리카 영해 및 영역에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지며, 그러한 허가는 2년간 연장 가능하다. 코스타리카 영해 및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 선박 및 그 선원은 수상운송서비스 또는 어업, 다이빙, 또는 그 밖의 스포츠나 관광 관련 활동 등의 이윤 창출 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p>

13. 분야	수입 및 도매유통 - 원유 및 그 석유제품
관련의무	시장접근 (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356호, 1993.8.24, 국영석유공사가 원유, 연료, 아스팔트 및 나프타의 수입, 정제 및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을 형성하는 탄화수소 국가독점법(Ley del Monopolio Estatal de Hidrocarburos Administrado por Recope “Establece Monopolio a favor del Estado para la Importación, Refinación y Distribución de Petróleo, Combustibles, Asfaltos y Naftas”)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가 수요 충족을 위한 원유, 그리고 연료, 아스팔트 및 나프타를 포함하는 석유제품의 수입 및 도매 유통은 국가가 독점한다.</p>

14.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 민간제약회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395호, 1973.10.30, 보건일반법(Ley General de Salud)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6조, 제112조, 제119조, 제128조,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p> <p>행정부령 제16765호, 1985.12.13, 민간제약회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tablecimientos Farmacéuticos Privados) 제3조, 제5조, 제6조, 제20조 및 제27조</p> <p>행정부령 제25493-S호, 1996.8.30, 영업 개시 및 2년 주기 허가 갱신을 위한 제약회사의 보건부 등록에 대한 조항(Disposiciones para la inscripción de los establecimientos farmacéuticos en el Ministerio de Salud, tanto para iniciar operaciones como para renovar el permiso cada dos años) 제1조 및 제2조</p> <p>법률 제7786호, 1998.4.30, 마약, 향정신성 약물, 비허가 의약품, 관련 활동,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Ley sobre estupefacientes, sustancias psicotrópicas, drogas de uso no autorizado, actividades conexas, legitimación de capitales y financiamiento al terrorismo) 제2조 및 제38조</p> <p>행정부령 제37111-S호, 2012.1.12,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통제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Control de Drogas Estupefacientes y Psicotrópicas)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및 제50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마약, 향정신성 물질, 화장품 및 약 성분을 포함한 건강보조식품 등 약품 및 수의약품의 도·소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코스타리카에 설립되어야 한다. 해당 제약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등록 및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특정 기간 동안으로 제한된다.</p> <p>모든 민간제약회사는 그 운영을 대리할 수 있는, 제약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가 필요하다. 그러한 전문직 종사자는 한번에 하나의 제약 회사만을 감독할 수 있다.</p> <p>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수입과 유통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따른다.</p>

15.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 생체의료기기 및 소재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34482-S호, 2008.3.3, 생체의료기기 및 소재의 등록, 분류, 수입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registro, clasificación, importación y control de equipo y material biomédico)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생체의료기기 및 소재를 수입, 상업화 및 유통할 경우 관할 보건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인은 코스타리카에 법률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생체의료기기 및 소재를 도매 또는 소매로 유통하고자 하는 인은 코스타리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p>

16. 분야	해상운송서비스 ⁵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104호, 1853.6.6, 상법 제3권 해상 무역(Código de Comercio de 1853-Libro III Del Comercio Marítimo) 제537조 및 제580조</p> <p>법률 제12호, 1941.10.22, 선박등록법(Ley de Abanderamiento de Barcos) 제5조, 제41조 및 제43조</p> <p>행정부령 제12568-T-S-H호, 1981.4.30, 코스타리카 선박 등록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Registro Naval Costarricense)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p> <p>행정부령 제23178-J-MOPT호, 1994.4.18, 국가등록선박의 공공동산등록부로의 이전(Traslada Registro Nacional Buques al Registro Público Propiedad Mueble) 제5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 국민, 코스타리카 공공기관, 코스타리카에 설립 및 소재한 기업, 그리고 선박회사 대표만이 코스타리카에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50톤 미만의 선박을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등록하는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내에 한 척 이상의 외국 등록 선박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 또는 해외 설립 기업은, 모든 선박 관련 사안에 대하여 공공 당국과의 연락을 담당할 대리인 또는 법률 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p> <p>코스타리카 항구 간 무역 활동 및 관광객 해상운송 활동은 코스타리카에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p> <p>코스타리카에 등록된 코스타리카 국적 선박의 선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국민은, 자신이 지휘하는 선박 가치의 최소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탁하여야 한다.</p> <p>코스타리카 항구에 정박하며, 해외 수송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스타리카 등록 선박의 승무원 중 최소 10퍼센트는 코스타리카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이는 그러한 훈련된 인력이 국내에서 가용한 경우로 한정한다.</p>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항구 내에서의 해상서비스는 부속서 II의 유보항목 4번(공공서비스) 및 11번(철도, 항만 및 공항)의 적용을 받는다.

17. 분야	항공운송서비스 및 특수항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150호, 1973.5.14, 민간항공 일반법(Ley General de Aviación Civil)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128조, 제143조, 제149조, 제150조, 제156조 및 제172조</p> <p>행정부령 제4440호, 1975.1.3, 코스타리카 항공 등록부 운영에 관한 규정 (Reglamento para la Operación del Registro Aeronáutico Costarricense) 제20조 및 제38조</p> <p>행정부령 제38716-MOPT호, 2014.6.16, 항공기술인력 면허에 관한 규정 - 코스타리카 항공 규정(Reglamento de Licencias al Personal Técnico Aeronáutico, denominado RAC-LPTA Regulaciones Aeronáuticas Costarricenses)</p> <p>행정부령 제31520-MS-MAG-MINAE-MOPT-MGPSP호, 2003.10.16, 농업 항공 활동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las Actividades de la Aviación Agrícola) 제13조</p> <p>행정부령 제37972-MOPT호, 2013.8.16, 운영 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 (Reglamento para el otorgamiento de certificados de explotación) 제4조</p>
유보내용	<p><u>투자</u></p> <p>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항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증서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에 발행된다.</p> <p>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기업만이 유상 항공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코스타리카 항공 등록부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코스타리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민 역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p> <p>협정 또는 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 항공운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인증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발행된다.</p> <p>농업 항공 활동 개발을 위해 개발 인증서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그 기업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코스타리카 국민이 소유하여야 한다.</p> <p>모든 공급자 인증서 소유인은 코스타리카 내에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을 두어야 한다.</p>

18. 분야	통신서비스 ⁶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코스타리카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제121조제14항 법률 제8642호, 2008.6.4, 통신일반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0조 행정부령 제34765-MINAET호, 2008.9.22, 통신일반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 법률 제8660호, 2008.8.8, 통신부문 공공기관의 강화 및 현대화에 관한 법률(Ley de Fortalecimiento y Modernización de las Entidades Públicas del Sector Telecomunicaciones) 제5조, 제7조, 제18조 및 제39조 법률 제7789호, 1998.4.30, 에레디아 공공서비스청 개혁법(Ley de Transformación de la Empresa de Servicios Públicos de Heredia ESPH) 제7조 및 제1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에서 무선서비스는 국가 소유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며, 법 또는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별 양허에 따라 코스타리카 의회가 규정한 조건 또는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 행정부 또는 민간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허,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양허, 승인 및 허가를 부여하려면 경제적 수요심사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기본전화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코스타리카 의회에서 부여한 특별 양허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에 의하여 설립 또는 인수된 기업 자본에 대한 참여는 최대 49퍼센트로 제한된다. 에레디아 공공서비스청은 공법 또는 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과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이 코스타리카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⁶ 방송을 제외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신호 전송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19. 분야	시청각 - 광고 -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그 밖의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8642호, 2008.7.4, 통신일반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1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0조</p> <p>행정부령 제34765-MINAET호, 2008.9.22, 통신일반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5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제133조, 제134조, 제138조, 제140조 및 제141조</p> <p>법률 제6220호, 1978.4.20, 방송매체 및 광고대행사 규제에 관한 법률(Ley que Regula Medios de Difusión y las Agencias de Publicidad) 제3조 및 제4조</p> <p>법률 제1758호, 1954.6.19, 라디오(무선서비스)법[Ley de Radio (Servicios Inalámbricos)]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5조</p> <p>법률 제4325호, 1969.2.17, 국가제작 예술 프로그램의 광고(Publicidad Programas Artísticos de Producción Nacional) 제1조</p> <p>법률 제5812호, 1975.10.10, 외국 연예인 고용 및 조세 규제에 관한 법률 (Ley que Regula Contratación e Impuestos a Artistas Extranjeros del Espectáculo) 제3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무선서비스는 국가 소유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며, 법 또는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별 양허에 따라 의회가 규정한 조건 및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 행정부 또는 민간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에서 가입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허,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양허, 승인 및 허가를 허용하려면 경제적 수요심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p> <p>가입에 의한 통합 지상파 텔레비전 시스템의 경우, 양허권자는 코스타리카 영역의 최소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방송되며, 일일 최소 송출 요건인 14시간을 충족하고, 그 신호 수신에 관련 규정에 명시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수용 가능한 시청률과 해당 송출권을 보유한 코스타리카 텔레비전 채널을 편성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입에 의한 텔레비전서비스의 경우, 송출된 국영 채널의 광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정 없이 완전하게 방송될 것이다.</p>

단독소유기업·개인기업의 형태인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기명 주식을 자본으로 소유한 기업만이 대중매체 및 광고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나 외국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체 또는 광고대행사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 및 지분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국가 자율 기관 또는 준자율 기관,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 및 국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프로그램에 사용된 중간 광고, 스팟 광고 및 촬영 광고는 코스타리카 국민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중간 광고에 출연하는 방송인은 과학기술통신부 라디오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라디오국에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 방송인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송인이 통신일반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중간 광고의 방송이 승인되지 아니한다.

코스타리카에서 제작 및 편집된 경우 중간 광고는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간주된다.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중미 국가들에서 제작된 중간 광고 역시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간주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영화 프로그램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해외에서 녹음된 시앰송으로 구성된 광고의 경우, 그 광고가 방송될 때마다 일괄 지불하여야 한다.
- 나. 각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영화관에서 방송되는 하루 광고의 30퍼센트만을 코스타리카 외 지역에서 제작할 수 있다.
- 다. 중미 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광고의 경우, 광고 가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라. 해외에서 녹음된 라디오 프로그램 및 라디오 드라마의 수는 각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루에 방송되는 총 프로그램 및 드라마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마. 해외에서 촬영 또는 녹화된 프로그램의 수는 하루에 방송되는 총 방송 프로그램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수의 예술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고용 가능한 코스타리카 예술가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 예술가를 고용 또는 채용한 인은 동일한 공연을 위해 동일한 수의 코스타리카 예술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20. 분야	주류의 상업화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9047호, 2012.6.25,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 및 상업화에 관한 법률(Ley de Regul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bebidas con contenido alcohólico)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주류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다. 면허는 5등급(가, 나, 다, 라 및 마)⁷으로 분류되며, 5년간 유효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판매, 교환, 차용, 양도, 이전, 양여 또는 협상될 수 없다.</p> <p>면허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p> <p>가. 관련 도시계획의 조항 또는 이를 대신하여 시행 중인 다른 규정</p> <p>나. 토지 사용에 관한 조항</p> <p>다. 상업의 자유 및 건강권을 포함하여, 편리함, 합리성, 비례성, 합당성, 미성년자의 이익 우선, 그리고 시(市)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균형 발전. 이러한 목적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부 및 알코올 중독과 약물의존 연구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p> <p>라. 가급 및 나급 면허의 경우, 최대 주민 300명당 1개의 면허만이 발급될 수 있다.</p> <p>가급, 나급 및 다급 면허의 경우, 주거 전용 구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도시 계획이나 그 밖의 시행 중인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가급 및 나급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장은 공공 또는 사립 교육 기관, 아동 영양센터, 종교 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센터, 병원, 클리닉이나 기본 통합 건강 관리 센터의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4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급 허가인 경우, 사업장은 상기 명시된 시설로부터 최소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p>

⁷ 각 면허 등급의 정의는 법률 제9074호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 및 상업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투명성 목적상, 각 면허가 포함하는 활동 및 사업 유형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가. 면허 가: 주류 판매가 가능하나 영업장 내 음주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 나. 면허 나: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칸티나, 바, 태번, 무도회장,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영업장 내 음주가 허용되는 사업
- 다. 면허 다: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영업장 내 음식을 곁들인 음주가 허용되는 사업
- 라. 면허 라: 소형 및 대형 슈퍼마켓
- 마. 면허 마: 코스타리카 관광청(ICT)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지정한 활동 및 기업

부속서 II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코스타리카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위하여 채택된 유보를 규정한다.

가. 제9.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이 유보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에 기재된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그리고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3.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목록 내 유보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에 대하여, 코스타리카는 다음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p> <p>나.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 2) 수산, 또는 3)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2. 분야	문화 산업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시청각 협력 협정 등 문화 산업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향후 서명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화 활동 진흥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제한 또는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p> <p>문화 산업은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을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인쇄된 신문이나 전자 신문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한다.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라. 인쇄된 악보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판독 가능한 악보의 제작, 배포, 또는 판매, 또는 마.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램서비스, 그리고 방송망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3.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보육, 공공 하수도 서비스 및 상수도 공급 서비스.

4. 분야	공공서비스 ¹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코스타리카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제 활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양허, 허가 및 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발생한 국가 독점에 대하여 법에 따라 또는 행정적으로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법적 의무로서 모든 유형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며 양허, 허가 또는 승인의 취득이 요구되지 않는 기관 및 공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¹ 공공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발전, 송전, 배전 및 상업화를 포함한 전기 에너지 공급, 급수전서비스의 설치, 운영 및 유지뿐만 아니라 음용수, 하수의 수집, 처리 및 배출, 그리고 잔류수 및 빗물을 포함한 상하수도 공급서비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석유, 아스팔트, 가스 및 나프타 유도체뿐만 아니라 배급소의 국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석유, 아스팔트, 가스와 나프타를 포함한 탄화수소 유도체 연료의 공급, 관개 및 배수, 항공 운송을 제외한 승객의 유료 공공 수송, 국가 항구에서의 해상 및 항공 서비스, 철도화물 운송, 고체 및 산업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우편 통신의 사회서비스, 코스타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규제를 받는 그 밖의 모든 서비스.

5. 분야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유아, 초등 및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 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교육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밖의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소수민족 및 원주민 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취약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복권, 베틱 및 도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복권, 베틱 및 도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게임서비스 ²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게임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는 이 부속서의 유보항목 8번(복권, 베팅 및 도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복권, 베팅 및 도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분야	전기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발전, 송전, 변압, 배전 및 상업화를 포함한 전기 에너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1. 분야	철도, 항구 및 공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철도, 항구 및 공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천연 자원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보전, 관리, 보호, 탐사, 채취 및 이용을 포함하여, 천연 자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어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어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4. 분야	환경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환경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코스타리카는 특급배달서비스 ³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우편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³ 이 협정의 목적상,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거,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급배달서비스는 1) 항공운송서비스, 2) 정부 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급된 서비스 또는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그 기업에 유보된 서비스, 3) 우편 통신의 사회서비스 또는 4) 해상운송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방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방송)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조사 및 경비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무기 및 폭발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무기 및 폭발물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및 소지를 포함하여, 무기 및 폭발물에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9.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u>투자</u> 코스타리카는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는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속서 III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코스타리카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코스타리카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그 비합치 조치 목록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진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이 있을 경우 그 약속에, 또는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특정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명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코스타리카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부속서 III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현재 공급하고 있는 법인이 코스타리카 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거나 설립된 경우,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건전성 사유로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는 제1절 또는 제2절의 유보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절 또는 제2절의 유보사항으로서 기재되는 조치는 건전성 사유로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 코스타리카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비합치 조치)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법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¹
5. 부속서 III-가는 당사국들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거나, 제11.10조(예외)의 적용을 받는 특정 조치를 의미한다.

¹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II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1644호, 1953.9.26, 국가은행제도 기본법(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p> <p>법률 제4646호, 1970.10.20, 자율기관 이사회의 통합에 관한 수정법(Ley que Modifica la Integración de las Juntas Directivas de Instituciones Autónomas)</p> <p>법률 제7558호, 1995.11.3,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기본법(Ley Orgánica del Banco Central de Costa Rica)</p> <p>법률 제7732호, 1997.12.17, 증권시장 규제법(Ley Reguladora del Mercado de Valores)</p> <p>법률 제8187호, 2001.12.18, 국가은행제도 기본법(법률 제1644호) 제117조에 대한 개정 및 그 개정(Reforma del Artículo 117 de la 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 No. 1644 y sus reformas)</p> <p>법률 제7107호, 1988.11.4, 공화국 금융제도 현대화법(Ley de Modernización del Sistema Financiero de la República)</p> <p>법률 제7052호, 1986.11.27, 주택금융제도 및 주택융자은행 설립법 (Ley del Sistema Financiero Nacional para la Vivienda y Creación del Banco Hipotecario de la Vivienda)</p> <p>법률 제4351호, 1969.7.11, 국민지역개발은행 기본법(Ley Orgánica del Banco Popular y de Desarrollo Comunal)</p> <p>행정부령 제28985호, 2000.10.18, 국가은행제도 기본법 제59조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l artículo 59 de la 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p> <p>법률 제8634호, 2008.4.23, 개발 관련 은행제도법(Ley del Sistema de Banca para el Desarrollo)</p> <p>법률 제9274호, 2014.11.12, 개발 관련 은행제도법 포괄 개정(Reforma Integral de la Ley Sistema de Banca para el Desarrollo)</p> <p>법률 제8642호, 2008.6.4, 통신일반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p>

<p>유보내용</p>	<p>국가는 공법상의 국영은행 및 비국영은행의 부채를 보증한다.</p> <p>당좌예금 및 저축예금 부문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p>가. 개발 목적의 신용 자금을 관리하는 국영 은행의 최소대출잔액이, 해당 준비금 공제 후 국내 및 외국 통화로 구성된 단기예금(30일 이하) 총액의 17퍼센트가 되도록 항상 유지한다. 예금 전체가 국내 통화만으로 구성된 경우, 그 비율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15퍼센트만 되도록 한다. 관리자 역할을 하는 국영은행 또는 은행이 민간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은 최소준비금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그러한 자금은 국내 통화의 경우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이 산정한 기본 수동금리의 50퍼센트, 또는 외국 통화의 경우 1개월 만기 리보(LIBOR)금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예치될 것이다.</p> <p>나.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인 또는 능동적인 기본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최소 4개의 대리점 또는 지점을 초로테가(Chorotega), 센트럴 퍼시픽(Central Pacific), 브룬카(Brunca), 애틀랜틱 우에타르(Atlantic Huetar), 그리고 노스 우에타르(North Huetar)에 설립하고, 이때 해당 준비금을 공제한 후 국내 또는 외국 통화로 구성된 단기예금(30일 이하) 총액의 최소 10퍼센트를 은행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사회가 지정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으로 기탁한다. 그러한 자금은 국내 통화(콜론화)로 예치하는 경우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이 산정한 기본 수동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금리를, 외국 통화로 된 자금의 경우 1개월 만기 리보(LIBOR)금리를 적용하여 예치될 것이다.</p> <p>국가 또는 그 산하 기관이 자본금의 대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국영기관 및 국영기관의 성격을 띤 공공기관은 공법상 국영상업은행 및 비국영은행을 통해서만 당좌예금 및 저축예금을 예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p> <p>협동조합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려면, 최소 10개의 코스타리카 협동조합이 요구된다.</p> <p>연대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려면, 최소 25개의 코스타리카 연대협회가 요구된다.</p> <p>국가개발신탁[Fideicomiso Nacional para el Desarrollo(FINADE)]의 수탁인은 공공은행이며, 공공은행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p> <p>국가이동통신펀드[Fondo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FONATEL)]의 신탁 계약은 국가은행제도의 공공은행과 체결된다.</p>
-------------	--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비은행 금융서비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044호, 1972.9.13, 비은행 금융회사 규제법(Ley Reguladora de Empresas Financieras no Bancarias)
유보내용	비은행 금융회사의 동산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비은행 금융회사는 금융리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4351호, 1969.7.11, 국민지역개발은행 기본법(Ley Orgánica del Banco Popular y de Desarrollo Comunal)
유보내용	국민지역개발은행(Banco Popular y de Desarrollo Comunal)만이 각각의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라 고용주 및 근로자가 납부한 의무부담금을 관리할 것이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탁 받는 금융기관)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1644호, 1953.9.26, 국가은행제도 기본법(Ley Orgánica del Sistema Bancario Nacional)</p> <p>법률 제7107호, 1988.11.4, 공화국 금융제도 현대화법(Ley de Modernización del Sistema Financiero de la República)</p> <p>법률 제5044호, 1972.9.13, 비은행 금융회사 규제법(Ley Reguladora de Empresas Financieras no Bancarias)</p> <p>법률 제4179호, 1968.8.22, 협동조합 및 국립협력개발연구원(INFOCOOP) 설립법(Ley de Asociaciones Cooperativas y de Creación del INFOCOOP)</p>
유보내용	민간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및 저축신용협동조합과 같이 코스타리카에서 공중으로부터의 예금 수탁이 승인된 금융기관은, 코스타리카 법에 따른 구성 또는 조직이 요구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732호, 1997.12.17, 증권시장 규제법(Ley Reguladora del Mercado de Valores)</p> <p>규정 제571호, 2006.5.9, 주식 공모에 관한 규정(Reglamento sobre Oferta Pública de Valores)</p> <p>국립증권거래소 주식회사 입법개요 - 주식중개인에 관한 규정(Compendio de Normativa de la Bolsa Nacional de Valores S.A. - Reglamento sobre Agentes de Bolsa)</p> <p>규정 제762호, 2008.12.19, 관리회사 및 투자금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sobre Sociedades Administradoras y Fondos de Inversión)</p> <p>규정 제801호, 2009.9.11, 증권 평가 및 리스크 평가회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sobre Calificación de Valores y Sociedades Calificadoras de Riesgo)</p>
유보내용	<p>발행자, 또는 비거주자인 제3자의 해외 발행 주식 공모는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른다.</p> <p>증권감독원[Superintendencia General de Valores(SUGEVAL)]은 코스타리카가 가입한 국제 조약 및 그 밖의 외국 증권시장 규제기관과 체결한 정보교환협약에 대한 예외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교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려면 코스타리카 국민이거나, 코스타리카에 합법적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p> <p>뮤츠티얼 펀드는 다음에 투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행 국가 또는 국가보증을 소유한 발행자가 발행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의 외화채권 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민간 발행사가 발행한 외화채권 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을 받은 발행사의 구조화 상품 라. 증권 공모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회원인 규

	<p>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 투자 자금. 재정자금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에 등록된 자금, 통합 자금(유럽연합 발행 지침의 정의에 따른다) 또는 코스타리카 자금에 대하여 수립된 것과 동일한 부채 및 다각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재정자금 포트폴리오의 외국인 관리자가 포트폴리오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원인 시장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금융감독원[Superintendencia General de Entidades Financieras(SUGEF)]의 감독을 받는 은행 및 코스타리카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구만이 공공사업 개발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다.</p> <p>국가 증권 및 코스타리카 비은행 공공기관의 발행을 제외하고, 부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은 의무 신용등급 발행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해외 소재 발행사의 신용 등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그 자회사가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인정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할 수 있다.</p>
--	---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8653호, 2008.7.22, 보험시장 규제법(Ley Reguladora del Mercado de Seguros) 법률 제12호, 1924.10.30, 보험공사법(Ley del 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유보내용	보험 회사 및 재보험 회사를 제외하고, 법인 설립이 요구된다.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대표 사무소의 영업 및 관측 행위는 금지된다. 국가는 보험공사[Instituto Nacional de Seguros(INS)]의 보험 관련 활동을 보장한다.

제 2 절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코스타리카는 자국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회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코스타리카 내 설립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코스타리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I-1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제11.10조(예외)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제11.10조(예외)를 저해함이 없이, 코스타리카가 한국의 부록 III-1에 규정된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조치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자국의 법령에서 채택 또는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

엘살바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엘살바도르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엘살바도르의 기존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그리고 유보된 기존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4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인 조치를 지칭한다.

1. 분야	면세 상업센터 및 시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엘살바도르 헌법 제95조(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Artículo 95) 엘살바도르의 해양항만 면세점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Ley para el Establecimiento de Tiendas Libres en los Puertos Marítimos de El Salvador, Artículo 5)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엘살바도르 태생의 엘살바도르 국민 및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엘살바도르 항구도시에 면세 상업센터 또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거나 그 기업의 파트너 과반수가 외국인인 경우, 그 기업은 엘살바도르 항구도시에 면세 상업센터 또는 시설을 설립할 수 없다. 엘살바도르 항구도시 내 센터 또는 시설 설립 허가는 재정부(Ministerio de Hacienda)의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가설건물의 위치는 항만위원회[Comisión Ejecutiva Portuaria Autónoma(CEPA)]가 결정할 것이다.

2. 분야	공연 예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이주법 제62-가조 및 제62-나조(Ley de Migración, Artículos 62-A y 62-B)</p> <p>입법령 제382호, 1970.5.29, 관보 제64호-227권, 1970.4.10(Decreto Legislativo No. 382, de fecha 29 de mayo de 1970,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64, Tomo 227, de fecha 10 de abril de 1970)</p> <p>행정부령 제16호, 1970.5.12, 관보 제87호-227권, 1970.5.18(Decreto Ejecutivo No. 16 de fecha 12 de mayo de 1970,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87, Tomo 227, de fecha 18 de mayo de 197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예술가는 국토개발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y Desarrollo Territorial)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종류의 유료 공연도 할 수 없으며, 먼저 그 예술가가 속한 적법하게 설립된 예술분야 직업별 노동조합의 자문 의견을 15일 이내에 구한다. 외국 예술가는 엘살바도르에서 예상되는 총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연수수료 예치금을 해당 조합에 지급한다.</p> <p>외국 예술가 또는 예술가 집단은 첫 공연일로부터 1년 내에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엘살바도르에서 공연할 수 없다.</p> <p>예술가는 음악, 노래, 춤 또는 낭독 공연을 하거나, 직접(예: 라이브) 또는 크거나 작은 규모의 청중 앞에서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공연을 위하여, 엘살바도르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활동하는 인이다.</p> <p>선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술가는 해당 조합에 적절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p>

3. 분야	서커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이민법 제62-다조(Ley de Migración, Artículo 62-C)</p> <p>법령 제122호, 1988.11.4, 관보 제219호-301권, 1988.11.25, 제3조(Decreto No. 122 de fecha 4 de noviembre de 1988,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219, Tomo 301, de fecha 25 de noviembre de 1988, Artículo 3)</p> <p>입법령 제382호, 1970.5.29, 관보 제64호-227권, 1970.4.10(Decreto Legislativo No. 382 de fecha 29 de mayo de 1970,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64, Tomo 227, de fecha 10 de abril de 1970)</p> <p>법령 제193호, 1989.3.8, 관보 제54호-302권, 1989.3.17, 제1조 및 제2조(Decreto No. 193 de fecha 8 de marzo de 1989,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54, Tomo 302, de fecha 17 de marzo de 1989, Artículos 1 y 2)</p> <p>서커스 회사에 관한 입법령 제122조 및 제193조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Reglamento para la Aplicación de los Decretos Legislativos 122 y 193 Relativos a Empresas Circenses, Artículos 1 y 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서커스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공연은 티켓 판매로 예상되는 1일 총 수입의 2.5퍼센트와 동일한 공연 수수료를 관련 서커스 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p> <p>모든 외국 서커스는 적절한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 이후에는 엘살바도르 서커스기업협회[Asociación Salvadoreña de Empresarios Circenses (ASEC)]에 통보하고 각 공연의 티켓 판매로 얻는 총 수입의 3퍼센트 및 서커스 내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한 깃발, 모자, 티셔츠, 풍선, 사진 및 그 밖의 용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의 10퍼센트를 엘살바도르 서커스기업협회에 지급한다. 외국 서커스는 충분한 금액의 보증금을 엘살바도르 서커스기업협회에 지급한다.</p> <p>엘살바도르로 들어오는 외국 서커스는 산살바도르에서 15일 동안만 공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5일 연장될 수 있다.</p> <p>엘살바도르에서 공연한 외국 서커스는 그 서커스의 출국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재입국할 수 있다.</p>

4. 분야	공연 예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엘살바도르 예술가의 대중공연 참여 및 대중 홍보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에 관한 법령, 입법령 제239호, 1983.6.9, 관보 제111호-279권, 1983.6.15 (Decreto de las disposiciones para regular la explotación de obras de naturaleza intelectual por medios de comunicación pública y la participación de artistas salvadoreños en espectáculos públicos,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111, Tomo 279, de fecha 15 de junio de 1983)</p> <p>법령 제18호, 입법령 제239호 제1조 및 제4조의 대체조항, 1983.6.9, 관보 제7호-282권, 1984.1.10 (Decreto No. 18, Sustitución de los artículos 1 y 4 del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7, Tomo 282, de fecha 10 de enero de 1984)</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종류를 불문하고 예술가가 라이브로 참여하는 대중공연의 경우, 참여하는 외국인 수의 20퍼센트와 동일한 수의 엘살바도르 국민이 참여한다.</p>

5. 분야	항공서비스 -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민간항공기구법 제39조 및 제40조(Ley Orgánica de Aviación Civil, Artículos 39 y 40) 민간항공기구법 기술규정(Reglamento Técnico de la Ley Orgánica de Aviación Civil) 제138조 및 제140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엘살바도르는 외국 항공 운송 당국이 발행하는 인가, 확인증 및 허가에 대한 인정 또는 유효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에 대하여 상호주의 요건을 적용한다.</p> <p>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술직원, 그리고</p> <p>나. 파일럿 및 그 밖의 기술직원</p>

6.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엘살바도르 공화국 헌법 제95조 및 제109조(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Artículos 95 y 109)
유보내용	<p><u>투자</u></p> <p>산업 공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집단을 포함한 외국인은 엘살바도르인의 농촌 토지 소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또는 그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 농촌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p> <p>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자본의 대다수를 외국인이 보유하거나 파트너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기업은 상기 항의 적용을 받는다.</p>

7.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노동법 제7조 및 제10조(Código de Trabajo, Artículos 7 y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모든 고용주는 직원의 최소 90퍼센트를 엘살바도르인으로 구성할 의무를 진다. 특별한 상황에 노동사회복지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ón Social)는 엘살바도르인으로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직원의 추가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고용주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기 언급된 부처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엘살바도르 직원을 교육할 의무를 진다.

8. 분야	생산조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동조합 일반법에 관한 규정 제6편, 제1장, 제84조(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Asociaciones Cooperativas Título VI, Capítulo I, Artículo 84)
유보내용	투자 생산조합의 경우, 파트너 총수의 최소 75퍼센트는 엘살바도르인이어야 한다.

9.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및 홍보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엘살바도르 예술가의 대중공연 참여 및 대중 홍보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에 관한 법령. 입법령 제239호, 1983.6.9, 관보 제111호-279권, 1983.6.15, 제4조(Decreto de las disposiciones para regular la explotación de obras de naturaleza intelectual por medios de comunicación pública y la participación de artistas salvadoreños en espectáculos públicos.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111, Tomo 279, de fecha 15 de junio de 1983, Artículo 4)</p> <p>법령 제18호, 입법령 제239호 제1조 및 제4조의 대체조항, 1983.6.9, 관보 제7호-282권, 1984.1.10(Decreto No. 18, Sustitución de los Artículos 1 y 4 del Decreto Legislativo No. 239, de fecha 9 de junio de 198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No. 7, Tomo 282, de fecha 10 de enero de 1984)</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엘살바도르에서 제작되는 공중파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및 인쇄물을 의미하는 엘살바도르 공공 통신 매체에서 사용되는 모든 상업광고의 제작 및 녹음의 최소 90퍼센트는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한다.</p> <p>다른 중미 당사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제작 또는 녹음한 상업광고는 그 당사국이 엘살바도르에서 제작 또는 녹음된 상업광고에 대하여 유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엘살바도르 매체에서 사용될 수 있다.</p> <p>엘살바도르에 수입되거나 인허가에 의거하여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되고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제 제품, 상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업광고의 경우, 엘살바도르 공공 매체에서 방송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이 규정의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광고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Publicidad)가 징수하는 일회성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p>

10. 분야	전문직서비스: 통관 대리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중미 통일관세법에 관한 규정 제76조(Reglamento de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Artículo 7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중미국가 국민만이 통관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있다.

11. 분야	운송서비스: 해상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양법 제42조 및 제53조(Ley General Marítimo Portuaria, Artículos 42 y 53) 선박항해 및 선원허가에 관한 규정 제32조(Reglamento para la Navegación de Buques y Autorizaciones de Gente de Mar, Artículo 32) 노동법 제7조 및 제10조(Código de Trabajo, Artículos 7 y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 공화국의 항구 간 항행 및 연안 항행 무역은 자국 국적 선박에 유보된다. 이는 중미 항구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외국 국적 선박은 자국법에 따른 자국 국적 선박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을 자국 국적 선박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등록되어 있는 선박 나. 자국 국기를 사용하는 선박 등록을 원하는 선주는 엘살바도르 공화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선주가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은 자국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해외에서 설립된 경우, 엘살바도르에 지점이나 자국법에 따른 그 밖의 종류의 영구적 상주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외국선박은 엘살바도르 해양등기소[Registro Marítimo Salvadoreño (REMS)]에 등록될 수 있다. 다만, 그 선박들은 사전에 선적국 내에서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양항만당국(Autoridad Marítima Portuaria)이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엘살바도르 해양등기소의 해당 부서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인도 엘살바도르 해양등기소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기구의 관계자가 되거나 해양항만당국이 규제 또는 통제하는 항만 관할권 내에서의 어떠한 직업, 교역이나 작업 또는 활동을 실행할 수 없다.

1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엘살바도르 공화국 헌법 제95조 및 제115조(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Artículos 95 y 115) 투자법 입법령 제732호 제7조(Ley de Inversione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732, Artículo 7), 그리고 상법 제6조(Código de Comercio, Artículo 6)
유보내용	투자 다음의 인만이 엘살바도르에서 소규모 상업, 산업 및 서비스 공급에 관여할 수 있다. 가. 엘살바도르 태생의 엘살바도르 국민, 그리고 나. 중미 당사국 국민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거나 파트너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기업은 소규모 상업, 산업 및 서비스 공급(“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이 유보목록의 목적상, 소규모 기업은 미화 200,000달러 이하의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다.

13.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신법 제123조(Ley de Telecomunicaciones, Artículo 123)
유보내용	<p><u>투자</u></p> <p>무료 수신 방송 서비스에 대한 양허 및 허가는 엘살바도르 태생의 엘살바도르 국민 또는 엘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자기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엘살바도르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부여된다.</p>

부속서 II

엘살바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엘살바도르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엘살바도르는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

3. 분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분야	운송서비스 육상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4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육상 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전문직서비스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¹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관련 전문직서비스는 이 협정상의 서비스 무역의 정의에 따른 전문직 활동에 대한 국내법 준수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6. 분야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엘살바도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조약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²</p> <p>엘살바도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조약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라. 통신서비스, 또는 마. 철도 운송</p>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엘살바도르는 공동체법으로 인한 공동체법 규범에서 유래되거나 중미통합체제(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의 기관 또는 그 승계기관이 채택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8. 분야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사설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사설 경비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유통서비스: 석유 제품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석유 제품의 유통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1. 분야	보건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보건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제약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약국,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의약품, 약품 및 화장품의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와 같은 제약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에너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전력 및 가스 산업의 발전, 송전 및 배전.

14. 분야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서비스.

15. 분야	시청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시청각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및 음향 녹음.

16. 분야	창조 산업: 창조적 콘텐츠 생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창조적 콘텐츠의 생산을 의미하는 창조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악, 연극, 문학,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온라인 포함) 및 소프트웨어 개발.

17.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유보내용	투자 엘살바도르는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광업 및 채석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엘살바도르는 광업 및 채석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속서 III

엘살바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엘살바도르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엘살바도르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엘살바도르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 비구속적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 있어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지는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의 자유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또는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엘살바도르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에 대한 엘살바도르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¹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엘살바도르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회사법, 입법령 제844호, 1996.10.10, 제1조, 제6조, 제41조 및 제111조(Ley de Sociedades de Segur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844, 10 de octubre de 1996, Artículos 1, 6, 41 y 111) 보험회사법 규정, 입법령 제44호, 1999.4.20, 제29조 (Reglamento de la Ley de Sociedades de Segur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44, 20 de abril de 1999, Artículo 29)
유보내용	보험회사는 엘살바도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외국 보험회사가 지점을 설립하도록 허용한다. ²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기업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이 주식의 최소 75퍼센트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가. 엘살바도르의 자연인 또는 중미 국가의 자연인 나.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대주주 또는 파트너가 엘살바도르 자연인 또는 중미 국가의 자연인인 법인 다. 중미 국가의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 또는 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관(예: Moody's, A.M. Best 또는 S&P)이 1등급으로 분류한 외국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² 엘살바도르는 지점 소유주 또는 주주들이 엘살바도르 보험 법규에 설정된 지급능력 및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입법령 제697호, 1999.9.2, 제5조, 제10조, 제26조, 제27조 및 제150조(Ley de Banc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97, 2 de septiembre de 1999, Artículos 5, 10, 26, 27 y 150)
유보내용	<p>엘살바도르에 설립된 은행은 고정자본이 기명주식으로 발행되고 10인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기업으로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한다.</p> <p>엘살바도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은행의 주식 중 최소 51 퍼센트는 다음 종류의 투자자가 보유하여야 한다.</p> <p>가. 엘살바도르 또는 다른 중미 국가의 국민</p> <p>나. 대주주 또는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엘살바도르 또는 다른 중미 국가의 국민, 또는 2) 대주주 또는 파트너가 엘살바도르 또는 다른 중미 국가의 국민인, 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법인 <p>다. 중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은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국제 관행에 따라, 그 국가에서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대상인 은행 2)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험성 평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은행, 그리고 3) 그 국가에서 유효한 법 규정 및 지침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은행, 또는 <p>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험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1등급 기관으로 승인되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및 그 밖의 외국 금융기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 및 그 밖의 외국 금융기관에도 이 호가 적용된다.</p> <p>엘살바도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은행 지점은</p>

	<p>다호 또는 라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의 지점이어야 한다.</p> <p>엘살바도르에서의 외국 지점 운영은 엘살바도르에서 그 지점들이 보유한 자본에 따라 제한된다.</p> <p>엘살바도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 은행 또는 금융 대기업이 주식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은행은 「은행법」(Ley de Bancos)에 명시된 대로 오직 동일한 외국 대기업의 다른 회사와 상호, 자산 또는 기반시설을 공유하거나 공동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한다.</p>
--	---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저축신용협동조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신용조합 및 저축신용조합법, 입법령 제849호, 2000.2.16, 제155조 및 제157조(Ley de Bancos Cooperativos y Sociedades de Ahorro y Crédito, Decreto Legislativo número 849, 16 de febrero de 2000, Artículos 155 y 157) 은행법, 입법령 제697호, 1999.9.2, 제10조(Ley de Banc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97, 2 de septiembre de 1999, Artículo 10) 협동조합 일반법, 입법령 제339호, 1986.5.6, 제1조 및 제16조(Ley General de Asociaciones Cooperativa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339, 6 de mayo de 1986, Artículos 1 y 16), 그리고 상법, 입법령 제671호, 1970.5.8, 제17조(Código de Comercio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71, 8 de mayo de 1970, Artículo 17)
유보내용	저축신용기관은 금융서비스 분야, 은행서비스 하위분야와 관련된 상기 유보항목에 은행에 대하여 규정된 소유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따른다. 저축신용기관 및 협동조합은 엘살바도르에 설립되어야 한다. 「은행법」(Ley de Bancos) 제10조에 규정된 지분제한은 자국법에 따라 확대된 법적 성격을 지니고 엘살바도르의 「비영리 협회 및재단법」(Ley de Asociaciones y Fundaciones sin Fines de Lucro)에 따라 국토개발부(Ministerio de Gobernación y Desarrollo Territorial)의 비영리 협회 및 재단 명부(Registro de Asociaciones y Fundaciones sin Fines de Lucro)에 적절하게 기재된 외국 비영리 재단 및 협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환전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환전법, 입법령 제480호, 1990.4.5, 제4조(Ley de Casas de Cambio de Moneda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número 480, 5 de abril de 1990, Artículo 4)
유보내용	<p>환전국은 엘살바도르에서 주식회사(S.A.)로 설립되어야 한다. 환전국 주식은 국가금융기관 또는 엘살바도르 국민이나 엘살바도르인으로만 구성된 법인의 자산이다.</p> <p>환전국은 외국환, 은행 환어음, 여행자 수표 및 외국통화로 표시된 그 밖의 지급수단의 매입 및 매도로 시장의 수요 및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 업무인 회사이다.</p> <p>주식회사(S.A.)는 주식회사로서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법인명에는 제한이 없으나 “Sociedad Anónima” 또는 그 약자인 “S.A.”를 바로 뒤에 붙여 다른 모든 기존의 기업들과 구분한다.</p>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 입법령 제697호, 1999.9.2, 제156조(Ley del Bancos, Decreto Legislativo número 697, 2 de septiembre de 1999, Artículo 156) 농업발전은행법, 입법령 제312호, 1973.4.10, 제14조(Ley del Banco de Fomento Agropecuario, Decreto Legislativo número 312, 10 de abril de 1973, Artículo 14)
유보내용	농업발전은행(The Banco de Fomento Agropecuario)은 예금보호국(Instituto de Garantía de Depósitos) 회원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요소에 규정된 대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의 자유무역협정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y Panamá)
유보내용	파나마는 금융서비스 장의 목적상 중미 당사국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제2절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유보내용	<p>금융서비스</p> <p>엘살바도르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회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제외한 외국 금융기관이 엘살바도르에 설립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신용정보내역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신용정보내역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뮤추얼펀드 운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뮤추얼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전자화폐 제공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전자화폐 제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시장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증권시장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연금 기금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연금 기금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형태의 여신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유보내용	엘살바도르는 고리대금 방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여신에 대한 금리 상한선 설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속서 I

온두라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온두라스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온두라스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기존의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리고 제9.13조제1항다호 및 제10.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온두라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131호, 제3편, 제2장, 제107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III, Capítulo II Artículo 107)</p> <p>법령 제90-1990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107조를 규정하는 도시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Decreto No. 90-1990, Ley para la Adquisición de Bienes Urbanos en las Áreas que delimita el Artículo 107 de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Artículos 1 y 4)</p> <p>법령 제968호, 관광지 계획 및 개발 선언법, 제5편, 제5장, 제16조(Decreto No. 968, Ley para la Declaratoria, Planeamiento y Desarrollo de las Zonas de Turismo, Título V, Capítulo V, Artículo 16)</p>
유보내용	<p><u>투자</u></p> <p>국경 및 해안선 40킬로미터 이내의 국유지, 일반 토지 및 사유지 및 온두라스 섬, 사주, 산호초, 방파제, 암석 및 모래 언덕 위의 토지는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 온두라스 국민이 완전히 소유하는 회사 및 정부기관만이 어떠한 명의 하에서도 취득, 소유 또는 보유할 수 있다.</p> <p>앞의 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도 그러한 지역의 도시 토지를 최대 40년(갱신 가능)까지 취득, 소유, 보유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온두라스 관광 협회(Instituto Hondureño de Turismo)에 의하여 관광 목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발, 또는 공익을 위하여 인증 및 승인되어야 한다.</p> <p>도시 토지를 취득, 소유 또는 보유하는 어떠한 인도 온두라스 관광 협회(Instituto Hondureño de Turismo)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p>

2.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3편, 제2장, 제137조(Decreto N 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Título III, Capítulo II, Artículo 137) 법령 제189-59호, 온두라스 노동법 제11조(Decreto No. 189-59, Artículo 11 Código de Trabajo de Honduras)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의 최대 쿼터는 최대 10퍼센트로 설정되며, 그들은 지급된 총 임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수령하지 못한다. 두 비율은 국가 경제 보호 및 증진 또는 특정 활동에서 온두라스 기술자 부족의 명백한 사유로 요구되거나 자국 근로자의 능력을 입증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자 요구되는 경우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집행부는 노동사회안전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를 통하여 발표된 합리적 합의를 통하여 각 회사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동안 두 비율을 최대 10퍼센트 감소시키거나 외국인 근로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회사의 관리자, 이사, 업무집행담당자, 감독관 및 일반 관리자가 각각 총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비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은 온두라스에 거주하여야 한다.

3.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6편, 제1장, 제337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VI, Capítulo I, Artículo 337)
유보내용	<u>투자</u> 소규모 산업 및 무역은 온두라스인을 위하여 유보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들이 귀화한 시민이고 그들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소규모 산업 또는 무역에 종사할 수 없다.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74-2013호, 2014.2.1, 협동조합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3조(Decreto No. 174-2013 del 1 de febrero de 2014, Ley de Cooperativas de Honduras, Artículos 18, 19 y 93)</p> <p>협약 제041-2014호, 2014.4.23, 온두라스 협동조합법 규정 제19조 (Acuerdo No. 041-2014 de fecha 23 de abril de 2014, Reglamento de la Ley de Cooperativas de Honduras, Artículo 19)</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협동조합감독위원회[Consejo Nacional Supervisor de Cooperativas (CONSUCOOP)]가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 온두라스에 비온두라스인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그러한 승인은 다음의 경우 부여된다.</p> <p>가. 사회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p> <p>나. 출신 국가에 상호주의가 있는 경우</p>

5. 분야	관세사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규정 제224-2008호(COMIECO XLIX)의 부속서 중미통일관세규정 제 76호[Anexo de la Resolución No. 224-2008 (COMIECO XLIX) Reglamento de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Artículo 76]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는 중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6. 분야	농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약 제2124-92호, 농지개혁 토지재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 (Acuerdo No. 2124-92, Reglamento de Adjudicación de Tierras en la Reforma Agraria, Artículos 1 y 2)
유보내용	<u>투자</u> 농지개혁 수혜자는 개인이나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농업종사자 기업의 일원으로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이어야 한다.

7.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51-2011호, 2011.7.15, 투자 촉진 및 보호법 제56조(Decreto No. 51-2011 del 15 de Julio de 2011, Artículo 56, Ley para la Promoción y Protección de Inversión)
유보내용	<p><u>투자</u></p>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¹이 온두라스에서 무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p>

¹ 이들은 온두라스에 합법적 거주지가 없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간주된다.

8.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804호에 의하여 개정된 대로, 법령 제549호 제4조, 국내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체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Decreto No. 549, Artículo 4, reformado por Decreto No. 804,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p> <p>협약 제669-79호, 국내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체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Acuerdo No. 669-79, Reglamento de la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 Artículo 2)</p>
유보내용	<p><u>투자</u></p> <p>면허권자는 온두라스 국민이거나 온두라스 기업일 것이 요구된다.</p> <p>대표,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온두라스 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기업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온두라스인이 보유하여야 한다.</p>

9.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서비스 - 우편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20-93호, 온두라스 우체국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Decreto No. 12 0-93, Ley Orgánica de la Empresa de Correos de Honduras, Artículos 3 y 4)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온두라스 우편시스템 운영은 온두라스 우정청[Empresa Hondureña de Correos (HONDUCOR)]에 배타적으로 유보된다.²</p>

² 다만, 이는 특급 배달 서비스에는 독점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분야	전기에너지 서비스
하위분야	전기에너지 송전 및 배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04-2013호, 전기산업 일반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Decreto No. 404-2013 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éctrica, Artículos 4, 6 y 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전력서비스 발전, 송전 및 배전은 사기업, 공기업 또는 혼합자본 법인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운영허가는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부여할 것이다.

11.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신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2장, 제73조, 제3항(Decreto N 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Capítulo II, Artículo 73, párrafo tercero)</p> <p>법령 제6호, 사상의 자유에 관한 법 제4장, 제30조(Decreto No. 6, Ley de Emisión del Pensamiento, Capítulo IV, Artículo 30)</p> <p>법령 제759호, 온두라스 기자협회법 제8조, 1981.1.1 법령 제79호에 의하여 개정(Decreto No. 759, Ley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Honduras, Artículo 8, reformado por Decreto No. 79 del 1ero de enero de 1981)</p>
유보내용	<p>투자</p> <p>오직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만이 인쇄 신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및 이들의 지적, 정치적 및 행정적 지휘를 하는 관리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³</p>

³ 이는 온두라스 밖에 설립된 신문 또는 뉴스 매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85-95호, 통신분야기본법 제1장, 제26조(Decreto No. 185-95, Ley Marco del Sector Telecomunicaciones Capítulo I, Artículo No. 26)</p> <p>협약 제141-2002호, 2002.12.26, 통신분야기본법 일반규정 제3편, 제1장, 제93조(Acuerdo No. 141-2002 de fecha 26 de diciembre del 2002,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Título III, Capítulo I, Artículo 93)</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정부는 공공 통신 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p>

13.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85-95호, 통신분야기본법 제1장(Decreto No. 185-95,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Capítulo I)</p> <p>협약 제141-2002호, 통신분야기본법 일반규정(Acuuerdo No. 141-2002,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양해된 통신서비스의 경우, 직접, 간접 또는 경제집단의 일부로 법인 자본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파트너”로 간주된다.</p> <p>애초에 온두라스 내에서 완료되지 못한 국제전화 때문에 직접 발생하고 시스템상 온두라스 밖이 발신지인, 온두라스 내에서 제공되는 전화서비스를 구성하는 콜백은, 금지된다.</p>

14.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약 제141-2002호, 통신분야기본법 일반규정 제3편, 제1장, 제93조 (Acuerdo No. 141-2002 de fecha 26 de diciembre del 2002,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Marco del Sector de Telecomunicaciones, Título III, Capítulo I, Artículo 93)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기업은 온두라스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온두라스에 주소를 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15.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건설 또는 컨설팅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토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47-1987호,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 일반법 제67조(Decreto No. 47-1987,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Artículo 67)</p> <p>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 일반법에 관한 규정 제100조 (가)부터 (라)까지 및 제101조[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Artículos 100 (A) – (D) y 101]</p> <p>법령 제753호, 온두라스 건축사협회 일반법 제37조 (나), (다), (라), (사) 및 (아)[Decreto No. 753,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 Honduras, Artículos 37 (b), (c), (d), (g), y (h)]</p> <p>온두라스 건축사협회 일반법에 관한 규정 제4조(아), 제7조 (가), (다), (라) 및 (아), 제13조, 제68조 및 제69조[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 Honduras, Artículos 4(h), 7(a), (c), (d) y (h), 13, 68 y 69]</p> <p>법령 제902호, 온두라스 기계, 전기 및 화학 협회 일반법 제40조 (다), (라) 및 (아)[Decreto No. 902,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Mecánicos, Electricistas y Químicos de Honduras, Artículo 40 (c), (d) y (h)]</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컨설팅 및 건설회사는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Colegio de Ingenieros Civiles de Honduras - CICH) 회원이 되고 온두라스에서 토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컨설팅 및 건축 회사는 특정 토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에 잠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이 소유한 기업에는 더 높은 회원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 직원은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토목공학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16.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석유 제품(액체 연료, 자동차 오일, 디젤, 등유 및 LPG)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549호, 자국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자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 제1장 및 제6장, 제4조 및 제2조(Decreto No. 549,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 Capítulo I y VI, Artículos 4 y 2)</p> <p>법령 제804호, 자국 및 외국회사의 대표, 유통업자 및 대리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Decreto No. 804, reforma el Artículo 4 de la Ley de Representantes, Distribuidores y Agentes de Empresas Nacionales y Extranjeras)</p>
유보내용	<p><u>투자</u></p> <p>온두라스 국민 및 온두라스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만이 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온두라스 국민에 의하여 최소 51퍼센트 소유되어야 한다.</p>

17. 분야	엔터테인먼트서비스
하위분야	복권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38호, 1977.4.23, 국립아동복지기금 기본법 제5조(다)(Decreto No. 438, de fecha 23 de abril de 1977, Artículo 5 (c), Ley Orgánica de Patronato Nacional de la Infancia)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립아동복지기금[Patronato Nacional de la Infancia (PANI)]은 국가가 발행하는 복권을 배타적으로 운영한다.</p>

18.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사립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3편, 제8장, 제34조, 제166조 및 제168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III, Capítulo VIII, Artículos 34, 166 y 168) 법령 제79호, 교육 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Decreto No. 79, Ley Orgánica de Educación, Artículos 64 y 65) 법령 제136-97호, 교원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Decreto No. 136-97, Ley del Estatuto del Docente, Artículos 7 y 8) 행정결정 제0760-5E-99호, 교원 기본법 일반규정 제6조(Acuerdo Ejecutivo No. 0760-5E-99, Reglamento General del Estatuto del Docente, Artículo 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학교 이사 및 관리인은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이어야 한다. 교육시스템의 모든 단계의 교사는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등 교육과정에서 특정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온두라스 국민이 없는 경우 외국 국민이 그러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앞 절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민의 출신 국가에서 온두라스 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외국 국민은 온두라스의 헌법, 윤리, 지리 및 역사를 지도할 수 있다. 모든 단계의 사립학교는 온두라스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학교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19. 분야	엔터테인먼트서비스 - 음악 엔터테이너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23호, 1968.10.23, 음악예술가보호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D ecreto No. 123 de fecha 23 de octubre de 1968, Ley de Protección a los Ar tistas Musicales, Artículos 1 - 4)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는 온두라스에서 단독으로 또는 단체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음악가가 그들의 수수료의 5퍼센트를 온두라스 예술가연합(Sindicato de Artistas de Honduras)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매니저 또는 임차인이 동일한 공연에 국내 음악가를 고용하는 것에 동의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 음악가는 온두라스에서 하는 각 공연에 대하여 온두라스 예술가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p>

20. 분야	문화 및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하위분야	선수권대회 및 축구경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선수권대회 및 시합 축구연맹 1부 아마추어 규정 제9조 및 제10조(Reglamento de Campeonatos y Competencias Liga Nacional de Fútbol No Aficionado de Primera División, Artículos 9 y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인 선수 등록의 경우, 내무정의부가 발행하여 그 선수들의 거주 신청서가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증명서가 요구된다. 축구연맹에 소속된 각 구단은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21. 분야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카지노 및 도박(룰렛, 카드, 펀터, 바카라, 슬롯머신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88호, 1977.2.16, 카지노 및 도박법 제3조(Decreto No. 488, de fecha 16 de febrero de 1977, Ley de Casinos de Juegos de Envite o Azar, Artículo 3)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 및 온두라스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만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22.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134-90호, 국내법 제13조 (3) 및 (4)[Decreto No. 134-90, Ley de Municipalidades, Artículo 13 (3) y (4)]</p> <p>법령 제104-93호, 일반환경법 제29조 및 제67조(Decreto No. 104-93, Ley General del Ambiente, Artículos 29 y 6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가만이 지방자치 당국을 통하여 공공용수 배급, 폐기물 처리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당국은 수도 건설, 식수·위생적인 하수·배수 유지 및 관리 및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집행을 책임진다.</p>

23.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도·소매 - 무기, 군수품 및 그 밖의 관련 품목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1호,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5편, 제10장, 제292조(Decreto No. 131,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Título V, Capítulo X, Artículo 292)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다음 물품의 도매 및 소매 유통은 온두라스 군대에게만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품 - 전투기 - 소총 - 41 구경 이상의 모든 등급의 권총 및 리볼버 - 온두라스 군대 표준 권총 - 모든 등급의 총기류에 대한 소음기 - 총기류 - 부속품 및 군수품 - 총기류용 카트리지 - 카트리지 적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치 및 그 밖의 부속품 - 화약, 폭발물, 캡 및 퓨즈 - 방독면, 그리고 - 공기총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업적 목적을 위한 폭발물의 사용은 적절한 온두라스 당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p>

24. 분야	조사서비스
하위분야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56-98호, 경찰기본법 제91조(Decreto No. 156-98, Ley Orgánica de la Policía Nacional, Artículo 91) 규정 제0771-2005호, 2005.6.18, 제5조 및 제15조 t), u) 및 v)[Reglamento N o. 0771-2005 de fecha 18 de junio de 2005, Artículos 5 y 15, letras t), u) y v)]
유보내용	<p><u>투자</u></p> <p>사설 경비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외국 회사는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온두라스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온두라스 태생의 온두라스 국민을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p> <p>외국인은 사설 경비 회사 운영을 위한 승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피고용인의 경우, 보안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무부 장관 및 노동사회보장국 장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Relaciones Exteriores y Secretaría de Trabajo y P revisión Social)으로부터 받은 허가증 사본 - 외국인 파트너는 권한 있는 당국이 인증한 그들의 출신 국가 및 거주지로부터의 범죄기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출신 국가 및 거주 국가 모두로부터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인증된 범죄기록 원본

25.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55-2004호, 2004.5.19, 민간항공법 제8편, 제1장, 제106조 및 제149조(Decreto No. 55-2004, 19 de mayo de 2004, Ley de Aeronáutica Civil, Título VIII, Capítulo I, Artículos 106 y 149)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온두라스 내의 두 지점 간 공공 항공 운송 서비스는 온두라스 회사에 유보한다.</p> <p>온두라스 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한다.</p> <p>가.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는 온두라스 국민 또는 회사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리고</p> <p>나. 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 및 관리 또한 온두라스인이 하여야 한다.</p> <p>보수를 위한 민간 특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민간 항공 기관(Agencia Hondureña de Aeronáutica Civil)의 승인이 요구되며 제공자는 온두라스 국민 또는 회사이어야 한다.</p>

26. 분야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연안 항법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67-94호, 상선기본법, 1995.1.2, 제2편, 제3편, 제7장, 제40조 (Decreto No. 167-94, Ley Orgánica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de fecha 2 de enero de 1995, Título II, III, Capítulo VII, Artículo 40) 협약 제000764호 해상운송규정, 1997.12.13, 제6조(Acuerdo No. 000764, Reglamento de Transporte Marítimo de fecha 13 de diciembre de 1997, Artículo 6) 법령 제154호, 어업법 제4장, 제26조(Decreto No. 154, Ley de Pesca, Capítulo IV, Artículo 2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상업 목적을 위한 연안 항법은 온두라스 상선에 유보한다. 온두라스 상선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선이사회(Dirección General de la Marina Mercante)는 외국 상선이 온두라스에서 연안 항법을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중미국가 선박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온두라스 상선은 온두라스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납입자본의 최소 51퍼센트가 온두라스 국민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하고 회사가 온두라스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민만이 상업용 어선의 선장이 될 수 있다.

27.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48호, 온두라스 철로설치법 제1장 및 제8장, 제32조 및 제12조 법령 제54호에 의하여 개정(Decreto No. 48, Ley Constitutiva del Ferrocarril Nacional de Honduras, Capítulos I y VIII, Artículo 32 y Artículo 12 reformado mediante Decreto No. 5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 국립철도(Ferrocarril Nacional de Honduras)는 온두라스 국민 및 온두라스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게만 자신의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 온두라스 국립철도의 고위 관리인은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인이어야 한다.

28. 분야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창고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협약 제0681호, 일반창고규정, 2005.10.24, 제5조(Acuerdo No. 0681, Reglamento de los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s, del 24 de Octubre de 2005, Artículo 5)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고정자본으로 온두라스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창고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만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p>

29.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음
유보내용	<p><u>투자</u></p> <p>온두라스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의 투자자의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권 및 그러한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자가 그 결과인 기업을 통제하는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온두라스는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p>이 유보의 목적상,</p> <p>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 유보안에 기술된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로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유지되거나 채택되는 모든 조치는 기존의 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p> <p>나. “공기업”이란 온두라스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업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p>

부속서 II

온두라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온두라스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온두라스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국영통신사[Empresa Hondureña de Telecomunicaciones (HONDUTEL)] 및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의 소유권 정도를 채택, 유지 또는 수정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2.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법의 적용 및 집행과 사회적 재할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거나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범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연금, 실업보험, 사회 보장 서비스, 연금 기금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및 보육.
조치	

3. 분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4.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석유제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원유, 합성유, 정제유 또는 벙커유 및 그들의 모든 파생물의 수입 및 도매 유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5.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온두라스는 한국과 관련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 조약을 기초로 국가에 대하여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온두라스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다음에 관한 모든 국제 조약을 기초로 국가에 대하여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어업</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p> <p>라. 철도운송</p>
조치	

6. 분야	정부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정부의 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7.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육상 운송 서비스, 여객, 화물 및 관련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육상 운송 분야, 여객 또는 화물 및 관련 부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8.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및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9. 분야	어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온두라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분야 및 어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및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10.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은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조치	

11. 분야	시청각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온두라스는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	

부속서 III

온두라스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온두라스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온두라스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온두라스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온두라스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온두라스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고 온두라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¹
3. 제11.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온두라스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온두라스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온두라스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비합치 조치)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²

¹ 온두라스 상법 제90조에 따라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는 분류에 따라 존재하는 기관으로, 주식으로 분할되는 설립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트너들은 자신의 책임을 그들이 서명한 지분으로 한정한다.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를 구성하는 요건은 온두라스 상법 제92조에 규정된다.

²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은행 및 대부조합, 금융회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금융제도법, 법령 제129-2004호, 제5조, 제6조, 제18조 및 제32조(Ley de Instituciones del Sistema Financiero, Decreto No. 129-2004 del 24 de septiembre de 2014, Artículos 5, 6, 18, y 32) 법령 제60-99호, 1999.6.3(Decreto No. 60-99 de fecha de 3 de Junio de 1999)
유보내용	<p>외국 금융기관은 앞에서 언급된 조치를 준수하는 주식회사(S.A.)(Sociedades Anónimas),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로 설립되어야 한다.</p> <p>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 운영은 온두라스에서 운영하는 사무소에 할당된 자본금액에 따라 제한된다.</p> <p>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및 그들의 각 자본준비금에 실질적으로 할당된 자본금액만을 발행할 수 있다.</p> <p>은행 및 보험에 관한 국가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는 본점을 둔 국가에 상호주의가 없는 경우 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의 개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주의의 부재는 다른 국가의 법이 외국은행으로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음을 말한다.</p> <p>외국은행 지점은 자체 이사회 또는 행정위원회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온두라스에 주소를 둔 대표가 최소 2인이어야 한다. 그러한 대표들은 그 사업에 대한 일반 지시 및 수행을 담당하고 온두라스에서 활동하며 지점 운영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p>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환전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환전국법, 법령 제16-92호, 1992.3.3, 제4조(Ley de Casas de Cambio, Decreto No. 16-92 del 3 de marzo de 1992, Artículo 4)
유보내용	온두라스 내의 환전국은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³ 환전국 주주는 온두라스 국적의 자연인이어야 한다.

³ 온두라스 상법 제90조에 따라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는 분류에 따라 존재하는 기관으로, 주식으로 분할되는 설립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트너들은 자신의 책임을 그들이 서명한 지분으로 한정한다.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를 구성하는 요건은 온두라스 상법 제92조에 규정된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거래소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21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 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21)
유보내용	온두라스에서 운영하는 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사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49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49)
유보내용	온두라스 내의 증권사는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펀드사무관리회사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82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82) 펀드사무관리회사 규정 제3조, 결의안 제171/11-02-2003호에 따라 승인(Artículo 3 del Reglamento de las Sociedades Administradoras de Fondos, aprobado mediante la Resolución No. 171/11-02-2003)
유보내용	온두라스 내의 펀드사무관리회사는 하나 이상의 뮤추얼펀드 및/또는 그 사안에 대한 법에 따른 투자펀드의 운영이라는 배타적인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주식의 예탁, 보상 및 청산을 위한 중앙예탁기관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139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139)
유보내용	온두라스에서 주식의 예탁, 보상 및 청산을 위한 중앙예탁기관은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재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보험 및 재보험 기관에 관한 법률, 법령 제22-2001호, 제9조, 제21조, 제47조, 제58조, 제96조, 제97조(Ley de Instituciones de Seguros y Reaseguros, Decreto No. 22-2001 del 11 de agosto de 2011, Artículos 9, 21, 47, 58, 96, 97)</p> <p>결의안 제948/05-08-2003호에 의하여 승인된 지점 및 외국보험기관, 국가 은행 및 보험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 2003.8.15 관보게재(Reglamento de Establecimientos de Sucursales de Instituciones de Seguros Extranjeras, de la Comisió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 aprobado mediante la Resolución No. 948/05-08-2003, Arts. 4 y 7,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La Gaceta,” con fecha 15 de Agosto de 2003)</p> <p>국가 은행 및 보험위원회 결의안 제947/05-08-2003호에 의하여 승인된 손해사정인 및 보험중개인에 관한 규정, 제3조, 2003.8.15 관보게재(Reglamento de Ajustadores de Pérdidas y Auxiliadores de Seguros, aprobado mediante la Resolución No. 947/05-08-2003 de la Comisió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 el 8 de Agosto de 2003, Art. 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La Gaceta,” con fecha 15 de Agosto de 2003)</p> <p>2003.12.11 결의안 제443호, 제7조(k)호[Resolución No. 443 del 11 de Diciembre de 2003, Art. 7, subpárrafo (k)]</p>
유보내용	<p>온두라스 내에 조직되는 보험기관은 자본이 기명주식으로 분할되는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설립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다.</p> <p>온두라스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보험기관은 제안된 회사의 최소 자본금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온두라스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Honduras)에 예치하거나 위의 금액을 국가 증권에 투자한다. 이 예치금은 신청이 승인 또는 처리된 경우 반환될 것이다.</p> <p>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온두라스 국민이거나 최소 3년 연속으로 온두라스의 거주자이어야 한다.</p> <p>손해사정인 또는 청산인, 사고 조사관 또는 손해 조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온두라스 국민이거나 온두라스의 합법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p> <p>외국 보험기관 지점은 자체 이사회 또는 행정위원회가 있을 것이요</p>

	구되지는 아니하나, 온두라스에 주소를 둔 1인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그 대표는 사업에 대한 일반 지시 및 수행을 담당하고 온두라스에서 활동하며 지점 운영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	---

제2절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저축대부조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온두라스는 저축대부조합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비합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온두라스는 온두라스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온두라스 내 외국 금융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I-가
온두라스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비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 조치

제11.10조(예외)에 따라, 온두라스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건전성을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함을 재확인한다.

제11.10조(예외)를 저해함이 없이, 온두라스가 자국의 법규에서 채택 또는 유지하고 한국 부록 III-1에 규정된 조치들과 동일하거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조치는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비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 변경 또는 수정은 원래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비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I

니카라과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니카라과의 유보목록은 제 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 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니카라과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기존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와 관련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4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 조치를 지칭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상법(Código de Comercio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248호(1916.10.30)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해외에 정식으로 구성된 회사 중 니카라과에 설립되었거나 대리점 또는 지점을 가진 회사는, 해당 등기소에 등록된 일반위임장을 보유하고 니카라과에 주소를 둔 법률대리인을 유지한다.</p>

2. 분야	음악가 및 예술가
하위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15호, 국립 예술포현 촉진 및 니카라과 예술가 보호법 (Ley No. 215, Ley de Promoción a las Expresiones Artísticas Nacionales y de Protección a los Artistas Nicaragüenses), 관보 제134호 (1996.7.17)</p> <p>법률 제723호, 영화 촬영 및 시청각 예술법(Ley No. 723, Ley de Cinematografía y de las Artes Audiovisuales), 관보 제198호(2010.10.18)</p> <p>국회 법령 제7445호, 라틴 아메리카 영화 공동제작 승인에 관한 법령(Decreto AN 7445, De aprobación del Acuerdo Latinoamericano de Coproducción Cinematográfica), 관보 제60호(2014.3.28)</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영화제작자와의 공동 제작은 최소 30퍼센트의 예술적, 기술적 및 창의적인 니카라과 국민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은 10퍼센트 이상의 니카라과의 경제적 참여를 보유하여야 한다.</p> <p>니카라과에서 제작된 외국 영화제작은 영화 생산을 위하여 최소 20퍼센트의 기술적, 창의적 및 예술적 니카라과인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p> <p>제작자가 니카라과인 인력의 참여를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작자는 그 국가에서 시행될 예산 비용의 5퍼센트를 현금으로 국립영화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지급할 것이다.</p> <p>영화 제작의 목적으로 그 나라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제작자는 국립영화진흥기금에 귀속될 영화제작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p> <p>어떠한 형식으로도든 모든 형태의 시청각 또는 영화 제작을 수행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니카라과 국립영화관에 등록되어야 한다.</p> <p>제작이 완료되면, 해당 작품의 사본은 니카라과 국립영화관의 영상 자료원에 보관되어야 한다.</p> <p>니카라과 밖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된 시청각 광고작업은 니카라과 영역 내의 상영을 위하여 니카라과 국립영화관에 관련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화관, 텔레비전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상영 또는 전송되는 시청각 광고물의 20퍼센트는 니카라과의 제작물이어야 한다.</p>

	<p>모든 외국의 예술가 또는 음악밴드는 사전 계약 또는 정부 협정을 통해서만 니카라과에서 공연할 수 있다.</p> <p>니카라과에서 상업적 성격의 프로그램, 공연 또는 리뷰에 출연하는 외국 예술가는 유사한 공연을 하는 니카라과인 예술가 또는 단체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p> <p>외국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니카라과인 예술가의 참여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연으로부터 그들이 얻은 순수입의 1퍼센트를 니카라과 문화연구소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예술가 또는 단체의 출신 국가가 니카라과인 예술가 또는 단체에게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니카라과에 세워지는 공공, 회화 및 조각 기념물의 설계 및 건축은 경쟁을 통하여 니카라과인 예술가에게 낙찰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니카라과인 예술가와 연계된 외국인에게 낙찰될 것이다.</p> <p>니카라과에 세워지는 공공, 회화 및 조각 기념물의 설계 및 건축을 위하여 선정된 외국인은 니카라과인 예술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작업한다.</p> <p>니카라과인 전문가 또는 라틴 아메리카 영화 공동제작협정 회원국의 거주자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상물의 경우, 그러한 공동 제작물의 감독은 해당 협정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또는 그 밖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출신의 공동 제작자가 담당한다.</p>
--	---

3. 분야	관광 - 호텔, 식당, 관광 가이드, 렌터카 및 그 밖의 관광 관련 활동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306호, 니카라과 공화국 관광산업 인센티브법(Ley No. 306, Ley de Incentivos a la Industria Turís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117호(1999.6.21) 및 그 개정</p> <p>니카라과 회사 및 관광활동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mpresas y Actividades Turísticas de Nicaragua), 관보 제99호(2001.5.28)</p> <p>니카라과 대형 여행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os Operadores de Viajes de Nicaragua), 관보 제100호(2001.5.29)</p> <p>렌터카 및 수상운송회사 활동 규제에 관한 규정(Reglamento que regula la actividad de las empresas arrendadoras de Vehículos Automotrices y Acuáticos), 관보 제108호(2001.6.8)</p> <p>관광 가이드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Guías de Turistas), 관보 제40호(2001.2.26)</p> <p>니카라과 소형 여행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Agencias de Viajes de Nicaragua), 관보 제96호(2001.5.21)</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서 관광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에 거주하거나 니카라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이 조항은 유람선 여행 중 관광 서비스의 제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관광산업 장려법을 활용하는 모든 인은 니카라과인 인력을 고용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다만, 노동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전문가 및 전문기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그러한 인은 관광업계의 요구에 따라 니카라과 시민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다.</p> <p>니카라과인만이 관광 가이드가 될 수 있다.</p>

4.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66호, 법률 본문 제776호, 「카지노 및 도박장 통제 및 규제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776호) 본문 및 그 통합 개정(Ley No. 766, Texto de la Ley No. 776,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Casinos y Salas de Juegos de Azar”, con sus Reformas Incorporadas), 관보 제238호(2014.12.16)</p> <p>법령 제06-2015호, 법률 제766호 카지노 및 도박장 통제 및 규제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규정(Decreto 06-2015, Reglamento de la Ley “6 6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Casinos y Salas de Juegos de Azar”), 관보 제47호(2015.3.1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카지노 및 도박장은 법에 따라 수립된 범주 내에 있는 경우 허가될 것이다.</p> <p>니카라과에서 운용되는 모든 베팅 게임은 카지노 및/또는 게임장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에 의하여 그 밖의 특정 법적 제도에 따라 명백하게 규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박 게임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제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게임이 이 법의 범위상 게임의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p> <p>카지노 및 도박장의 운영은 허용된 행위이지만 국가가 장려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카지노 및 게임장의 부당한 확산 또는 그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여, 공공 질서, 공공 보안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기업의 자유 행사를 규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간주된다.</p> <p>영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우선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카지노 또는 도박장의 운영에 대한 면허(Title-License)를 취득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필요에 따라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증인이 증인으로서 적절하게 공증하고, 공공 상업 등록소에 적절하게 등록된 정관 사본을 제출한다.</p> <p>카지노 및 도박장 운영을 위한 면허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면허의 발급 이전에, 신청인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은행금융기관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y otras Instituciones Financieras)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카지노 및/또는 도박장의 면허 또는 영업 허가증의 일부 또는 전부</p>

	<p>가 폐지되거나 취소되는 제재를 받은 회사의 주주, 파트너, 이사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였던 인은 카지노 및/또는 도박장 운영에 관한 면허를 보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주, 파트너, 이사, 관리자, 대표자 또는 직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p> <p>카지노 또는 도박장을 소유한 기업 또는 회사의 주주, 파트너, 이사, 관리자, 대리인 또는 직원인 인이 카지노 및 도박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에 플레이어 또는 베테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다.</p> <p>금지된 게임을 수입 또는 운영하거나 그러한 게임으로 어떠한 상업적 활동을 개발하는 것은 니카라과 전 영역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게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수입, 제조, 판매 또는 운영될 수 없다. 권한 있는 당국은 합당한 결정에 따라 금지된 게임의 유형을 결정할 것이다. 운영자가 상응하는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카지노 또는 도박장 운영 시설이 해당 영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게임 카탈로그에 열거된 도박으로 어떠한 상업적 행위를 운영 또는 개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p> <p>학교, 교회, 병원, 관청, 목사, 공동묘지, 로드 캠프(road camp), 극장, 시장 및 스포츠센터로부터 4백 미터 내에서는 카지노 및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된다.</p>
--	--

5. 분야	사업서비스(주류 판매 관련)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상법(Código de Comercio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248호(1916.10.30)</p> <p>법률 제306호, 니카라과 공화국 관광산업 인센티브법 (Ley No. 306, Ley de Incentivos para la Industria Turís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168호(1999.9.2) 및 그 개정</p> <p>법령 제26-96호, 니카라과 경찰법에 관한 규정(Decreto 26-96, Reglamento de la Ley de la Policía Nacional), 관보 제32호(1997.2.14)</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카지노, 나이트 클럽, 디스코텍, 코커털(cockerel) 및 허용된 모든 종류의 도박장 운영에 대하여 허가가 요구된다.</p> <p>호텔서비스 및 유사한 숙박시설, 식음료 공급, 디스코텍, 코커털 및 허용된 모든 종류의 도박장, 바, 펍, 그리고 당구장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외국 시민은 적절하게 갱신된 거주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p> <p>법적 실체는 해당 등록소에 적절하게 등록되어야 하고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6. 분야	건설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327호, 설계 및 건설 활동 규제법(Decreto No. 237, Ley Reguladora de la Actividad de Diseño y Construcción), 관보 제263호 (1986.12.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에 거주하거나 니카라과에 있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7. 분야	폭죽의 제조 및 유통 화기 및 탄약의 유통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10호,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물질의 통제 및 규제에 대한 특별법(Ley No. 510,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Armas de Fuego, Municiones, Explosivos, y otros Materiales Relacionados), 관보 제40호(2005.2.25) 및 그 개정</p> <p>법령 제26-96호, 니카라과 경찰법에 관한 규정(Decreto 26-96, Reglamento de la ley de la Policía Nacional), 관보 제32호(1996.2.14) 및 그 개정</p> <p>법령 제28-2005호, 법률 제510호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물질의 통제 및 규제에 대한 특별법에 관한 규정 (Decreto No. 26-96, Reglamento a la Ley No. 510, Ley Especial para el Control y Regulación de Armas de Fuego, Municiones, Explosivos, y otros Materiales Relacionados), 관보 제78호(2005.4.22) 및 그 개정</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서 폭죽을 제조 및 상업화하고 화기 및 탄약을 유통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고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에 거주하여야 한다.</p>

8. 분야	민간보안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903호, 민간보안서비스법(Ley No. 903, Ley de Servicios de Seguridad Privada), 관보 제141호(2015.7.29)</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26-2013호, 보안감시회사 및 항구보안인력 수권 및 인가(Resolución DGTA 026 – 2013, Habilitación y Acreditación de Empresas de Vigilancia y Personal Guardas de Seguridad Portuaria), 관보 제89호(2014.5.16)</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민간보안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니카라과에 설립되어야 한다.</p> <p>민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니카라과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갱신된 주소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취업허가를 보유하여야 한다. 무장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연인은 니카라과 국적이어야 한다.</p> <p>국토교통부 수상운송국(Dirección General de Transporte Acuático del Ministerio de Transporte e Infraestructura - DGTA)에 등록된 인력만이 항구 내에서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9. 분야	라디오 방송, 무료 텔레비전 수신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서비스 일반법 및 그 개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y sus reforma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07-97호,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No. 07-97 Reglamento del Servicio de Radiodifusión Televisiva), 관보 제228호(1997.11.28)</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사회적 대중 매체(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및 AM/FM 라디오 방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는 니카라과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여된다. 기업의 경우, 니카라과 국민이 기명된 총 자본의 51퍼센트를 소유하여야 한다.</p>

10. 분야	통신 - 전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66호, 니카라과인 아나운서만 니카라과 방송사 및 텔레비전의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 가능(Decreto No. 66, En radiodifusoras y televisiones del país, únicamente locutores nicaragüenses podrán ser utilizados para las narraciones de programas deportivos), 관보 제256호 (1972.11.10)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스포츠나 이와 유사한 상업적 프로그램의 진행·해설·생중계 또는 재전송과 관련하여 니카라과인 아나운서의 전문적 서비스만을 사용한다.</p> <p>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법이 니카라과 국민에게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 외국 국민은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p> <p>다른 국가에 독점적으로 전송되는 외국인 아나운서 프로그램의 경우, 이 조치의 규정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방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p>

11. 분야	통신 - 서비스 및 공중통신망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1996.9.19) 및 그 개정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통신서비스 마케팅 제공을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인 니카라과 정보통신 우편청(Instituto Nicaraguense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 TELCOR)의 허가가 요구된다. 그러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법인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외국인은 니카라과에 유효한 거주 허가 및 법적 주소를 보유하여야 한다.</p>

12. 분야	통신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p> <p>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1996.9.19)</p> <p>니카라과 공화국 상법(Código de Comercio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관보 제248호(1916.10.3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통신 및 우편 서비스 제공 또는 통신 주파수나 그 밖의 전송 수단의 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우편청이 부여한 자격 서류(양해, 면허, 등록 또는 인허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격 서류는 니카라과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니카라과에 법적 대리인을 두고 해당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될 것이며, 또한 니카라과 공화국의 관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고 통신 및 우편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법, 규정, 규칙, 결의안 및 행정약정의 모든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p> <p>회사가 외국 정부와 체결하고자 하는 상호접속 계약 또는 통신 분야의 그 밖의 모든 계약은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우편청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p>

13. 분야	통신 - 공중통신망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 06-97호, 가입형텔레비전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No. 06-97, Reglamento del Servicios de Televisión por Suscripción), 관보 제 205호(1997. 10. 28)</p> <p>행정협약 제02-97호, 위성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02-97: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Comunicaciones por satélite), 관보 제74호(1997.4.22)</p> <p>법령 제32-2012호, 법령 제128-2004호 TELCOR 기본법에 관한 일반규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Decreto No. 32-2012, Reformas y Adiciones al Decreto No. 128-2004,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 TELCOR), 관보 제188호(2012.10.3)</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가입형텔레비전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중통신망을 설치, 운영 또는 사용하려면,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한 허가가 요구된다.</p> <p>위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신호를 직접 판매하는 회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정보통신우편청과 신호랜딩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위성통신서비스를 판매하고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시스템과 관련한 신호 및 주파수의 발신 및 수신 권한을 이용하려면,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한 허가가 요구된다.</p> <p>민간 네트워크 운영자의 시설을 포함하여, 무선 전기 주파수의 할당을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양허 및 허가에서 특별히 승인되지 아니한 시설을 설립하려면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한 허가가 요구된다.</p> <p>위성라디오서비스에 할당 및/또는 부여된 위성 궤도 및 무선 전기 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권리는 양허 계약에 따라 부여된다.</p> <p>위성 궤도 및 그 무선 전기 주파수 스펙트럼의 관리 및 조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관련 기관, 공공 및/또는 민간 기관들과 함께 정보통신우편청의 독점적인 권한이다.</p>

14. 분야	통신 - 서비스 및 공중정보통신망(전화 포함)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p>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1996.9.19)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001-2004호, 서비스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경로 설정, 가용성 및 보안을 위한 국가계획의 정교화 및/또는 수정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001-2004, Reglamento para la Elaboración y/o Modificación de los Planes Nacionales de Encaminamiento, Disponibilidad y Seguridad del Tráfico de los Servicios y Redes de Telecomunicaciones), 관보 제20호(2004.1.29) 및 그 개정</p> <p>행정협약 제20-99호, 상호접속 및 접근에 관한 일반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20-99, Reglamento General de Interconexión y Acceso), 관보 제146호(1999.8.2)</p> <p>행정협약 제02-97호, 위성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정(Acuerdo Administrativo 02-97,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Comunicaciones por Satélite), 관보 제74호(1997.4.2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이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는, 공중에 제공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간 사용자 정보의 유형 또는 내용이 변동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지점 사이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실시간 전송과 관련된다. 다음의 경우, 정보통신우편청이 부여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요구된다.</p> <p>가. 무선 기반시설의 설치 및 니카라과 영역 내 주파수 밴드의 사용, 활용 또는 이용. 다만, 출력이 50밀리와트 미만인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 방사체 내의 산업, 과학 및 의료 장비, 또는 정보통신우편청의 그 밖의 규칙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공중 통신 망 운영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또는 인가 받은 망 운영자의 서비스 판매</p> <p>다.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운영 및 위성통신서비스의 상업화, 그리고</p> <p>라.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위성 시스템과 연계된 주파수 밴드 신호의 발신 및 수신 권한 이용</p> <p>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설 망 운영자는 니카라과 정보통신우편청에서 부여하는 자격요건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러한 망은 공중 통신 망의 성격을 가진다. 정보통신우편청의 의견에 따라 사설 망을 사용하는 특정 서비스의 상호접속에 관한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설 망 운영자에게는 허가 인증서를 요구할 것이다.</p> <p>자격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연인 및 법인은 법률 제 200호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의 자연인은 니카라과 내 거주지 및 법적 주소 확인증을 소유하여야 하며 외국의 법인은 니카라과 공화국 상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공중 통신 망은 정의된 네트워크 중단 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공중 통신 망은 사용자의 통신설비 및 망 완료 지점을 넘어서 위치한 통신 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p> <p>휴대전화서비스의 주파수 밴드에 대한 허가 증명서는 공개 입찰 절차를 통하여 정보통신우편청이 부여할 것이다. 특정 시장 부문의 스펙트럼에 대한 요청 수가 그러한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는데 요구되는 무선 주파수의 가용성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우편청은 무선 전기 스펙트럼의 할당 허가를 위한 공개 입찰을 수행할 것이다.</p> <p>외국 국가 중 국제 서비스 공급에 경쟁 조건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우편청은 비례성, 상호접속 지점 및 다른 사업자에 의한 입력 트래픽의 접수에 대한 비차별성의 요건을 설립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운영자는 국제 장거리 전화(ILD)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운영자에게 속한 각 노드 또는 교환국의 기록을 정보통신우편청에 제출하고 최신으로 유지한다. 등록되고 최신화된 국제 라우팅 경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운영자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한 국제 장거리 전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당사자들 간에 서명된 상호접속 계약서 사본을 정보통신우편청에 통보하고 제출한다.</p>
--	--

15. 분야	배전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839호, 법률 제272호 「전력산업법」 및 법률 제 554호 「에너지 안정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 그리고 법률 제661호 「전기 서비스 유통 및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법」 및 법률 제641호 「형법」에 대한 개정(Ley No. 839 Ley de Reformas y Adiciones a la Ley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a la Ley No. 554, “Ley de Estabilidad Energética”, de Reformas a la Ley No. 661, “Ley para la distribución y el uso responsable del servicio público de energía eléctrica” y a la Ley No. 641, “Código Penal”), 관보 제113호(2013.6.19)</p> <p>법률 제272호, 전력산업법(Ley No.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관보 제74호(1998.4.23) 및 그 개정</p> <p>2011년 에너지 분야 법률 요약(Digesto Jurídico del Sector Energético 2011), 관보 제176호(2012.9.1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배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력 유통업자는 전력 생산 및/또는 전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 시스템에 제공되는 배전서비스, 또는 2. 국가종합전력망시스템(SIN)과 연결 시 자가발전용량이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6. 분야	전력 - 30MW를 초과하는 수력발전프로젝트에 의한 발전
하위분야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50호 및 제151호(2010.8.9 및 2010.8.10) 법령 제44-2010호, 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에 관한 규정 (Decreto 44-2010, Reglamento a la 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50호(2010.8.9)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설비용량이 30MW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25 평방 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최고 수위를 유지하는 저수지가 있는 수력발전소는 각 프로젝트에 따라 특별·특정 법이 요구된다.

17. 분야	에너지 - 지열 에너지 발전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법률 제443호, 지열 자원 탐사 및 개발법 및 그 개정(Ley No. 443, Ley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Recursos Geotérmicos y sus reformas), 관보 제222호(2002.11.21)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 MEM)의 승인을 득한 후 니카라과 전력공사(Empresa Nicaragüense de Electricidad)의 참여를 통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은 지열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예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니카라과 전력공사는 니카라과 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가 유산으로 지정된 지열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참여를 통해 부과금 없이 신청 회사 주식의 최소 10퍼센트를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18. 분야	광업 부수 서비스 - 탄화수소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86호,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특별법(Ley No. 286,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관보 제109호(1998.6.12) 및 그 개정</p> <p>법률 제883호, 니카라과 석유공사(PETRONIC) 기본법 및 그 통합 개정[Ley No. 883, Ley Orgánica de la Empresa Nicaragüense de Petróleos (PETRONIC), con sus reformas incorporadas], 관보 제239호(2014.12.17)</p> <p>법령 제43-98호,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특별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43-98, Reglamento a la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관보 제117호(1998.6.24) 및 그 개정과 추가 사항</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탄화수소의 탐사 및 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 및 니카라과 내 영구 주소지를 보유한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유지한다.</p> <p>지질학, 지구 물리학, 지형도 작성, 지진 작업 또는 지구 화학 연구와 같은 탄화수소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니카라과에 영구 주소지를 둔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전문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니카라과 국적의 하도급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에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계약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니카라과 국적의 하도급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p> <p>그러한 서비스가 니카라과 내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서비스가 품질 기술 사양, 비용 및 적시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업자와 하도급업자는 해외에서 제품, 재료 및 장비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p> <p>천연 상태의 탄화수소 매장층은 국가 유산의 일부이다. 니카라과 공화국 영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그러한 매장층 영역은 국가의 책임이다. 니카라과 석유공사로 대표되는 국가는 비용 또는 위험 부담 없이</p>

	<p>법률 제879호에 규정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p> <p>니카라과에서 생산된 탄화수소의 표면 조사, 탐사 및 개발과 그 운송, 저장 및 마케팅 활동에서, 니카라과 석유공사는 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탄화수소 자원의 발굴, 탐사 및 이용에 연관된 모든 청원에 집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목적상, 요청을 제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에너지광업부에 대한 신청 과정에서 니카라과 석유공사의 참여에 대한 협정을 먼저 체결하여, 법률 제286호에 따른 허가 취득 또는 계약 체결 행위에 관심이 있는 회사와의 협력 및/또는 제휴 모델을 지지하여야 한다.</p> <p>니카라과 석유공사로 대표되는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위험, 부채,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률 제286호 제25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한다.</p> <p>니카라과에서 생산된 탄화수소의 표면 조사, 탐사 및 개발, 그리고 운송, 저장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니카라과 석유공사의 참여는 니카라과 석유공사에 계약자 이사회의 의석을 부여한다.</p> <p>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인은 니카라과 석유공사의 참여를 명시한 문서를 에너지광업부 탄화수소국장에게 제출한다.</p> <p>계약 만료시, 계약자는 토지, 영구적 작업물 및 시설물 등 니카라과 석유공사로 대표되는 국가에서 제공한 자산을 부과금 없이 반환한다.</p> <p>니카라과 석유공사는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및 상업화, 그리고 그 밖의 관련 활동의 수행을 목표로 할 것이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정제, 액화석유가스 실린더 충전 공장 또는 포장의 건설 및/또는 운영에 투자하는 회사 및/또는 제휴사의 구성 및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니카라과 국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일 수 있고 공공, 민간, 또는 혼합의 형태를 지닐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갖는 기존 회사와 연합 및/또는 제휴를 결성할 수 있다.</p>
--	---

19. 분야	광업 부수 서비스 -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전기 및 수도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령 제57-2006호, 법령 제119-2001호 「광산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특별법(법률 제387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 (Decreto No. 57-2006, Reformas y Adiciones al Decreto No. 119-2001, Reglamento de la Ley No. 387, Ley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관보 제170호(2006.8.31)</p> <p>법령 제119-2001호, 법률 제387호 광산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특별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19 -2001, Reglamento de la Ley No. 387,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관보 제4호(2002.1.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 회사, 자연인 및 법인은 자신의 고객을 대신하여 권리 및 계약 의무를 획득하고, 회사를 적절한 등록부에 등록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 단계에서 광업 양허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한 권한을 가진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20. 분야	어업 및 양식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489호, 어업 및 양식업 관련법(Ley No. 489, Ley de Pesca y Acuicultura), 관보 제251호(2004.12.27) 및 그 개정</p> <p>법령 제30-2008호, 법령 제09-2005호 어업 및 양식업 관련 법(법률 제 489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Decreto No. 30-2008, Reforma al Decreto No. 09-2005, Reglamento a la Ley No. 489, Ley de Pesca y Acuicultura), 관보 제130호(2008.7.9)</p> <p>법령 제009-2005호, 법률 제489호 어업 및 양식업 관련법에 관한 규정 (Decreto No. 009-2005, Reglamento a la Ley No. 489, Ley de Pesca y Acuicultura), 관보 제40호(2005.2.25)</p> <p>법령 제40-2005호, 고도 회유성 참치 및 관련 어종의 어업에 대한 특별 규정(Decreto No. 40-2005, Disposiciones Especiales para la pesca de Túnidos y especies afines altamente migratorias), 관보 제117호(2005.6.17)</p> <p>NTON 제03-045-03호, 니카라과 어업 방법 및 양식에 관한 표준 기술의 무 및 관련 부속서(NTON 03-045-03, Norma Técnica Obligatoria Nicaragüense Métodos y Artes de Pesca y sus Anexos), 관보 제231호 및 제236호 (2010.12.2 및 2010.12.10)</p> <p>각료협의 제014-2001호, 국가영역의 천연자원 사용권리 취득 요청 처리를 위한 행정규정(Acuerdo Ministerial No. 014 - 2001, Disposiciones Administrativas para la Tramitación de Solicitudes de Obtención de Derechos para el Aprovechamiento de Recursos Naturales del Dominio del Estado), 관보 제98호(2001.5.25)</p> <p>행정협의 PA 제005/2013호(Acuerdo Ejecutivo-PA-No.005/2013), 관보 제 81호(2013.5.6)</p> <p>행정결의 PA 제006-2014호, 수생생물자원의 수집 및 이동 마케팅을 위한 조치 및 어류관리메커니즘(Resolución Ejecutiva PA-No.006-2014, Medidas y mecanismos de ordenación pesquera para el acopio y comercialización móvil de recursos hidrobiológicos), 관보 제123호(2014.7.3)</p>
유보내용	<p><u>투자</u></p> <p>상업적 어업 허가 취득을 위하여, 니카라과 법인으로서의 설립, 공공사업등록소(Registro Público Mercantil)에의 적법한 등록 및 니카라과 내</p>

	<p>영주권과 명확한 주소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의 임명이 요구된다.</p> <p>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한 수산 자원의 사용은 니카라과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에 보조적이며, 관련 법에 수립된 규정 및 니카라과가 비준한 국제협정과 조약에서 수립한 조건 및 제한에 따를 것이다.</p> <p>영세 또는 소규모 어업은 니카라과 국민에게만 독점적으로 유보된다.</p> <p>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어업 및 양식 생산은 니카라과 영역 내에 적법하게 승인 및 설치된 공장에서, 각 수생생물자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 및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p> <p>승선인력의 90퍼센트와 선장의 100퍼센트는 니카라과인이어야 한다.</p> <p>제한 접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어업을 하려는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는 어떠한 면허 또는 어업 허가도 부여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법률 제489호의 발효일에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한 접근 제도에 따라 완전 개발이 선포된 자원은 카리브 해의 닭새우(spiny lobster) 자원 및 카리브 해 및 태평양 빼네이도스(Peneidos) 어족의 연안 새우 자원이며, 추후 니카라과 수산양식연구소(INPESCA)에서 선포하는 자원 목록도 포함한다.</p> <p>다랑어류 및 고도 회유성 유사 다랑어류 어업에 대한 특별 허가는 니카라과 국기를 게양한 선박, 니카라과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닌 구매 옵션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용 또는 임대된 외국 국적의 선박, 또는 외국의 참여가 있는 니카라과 국적 기업에 부여될 수 있다.</p> <p>과학 및 스포츠 낚시 또는 공개 접근이 가능한 자원의 상업적 어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만 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부여된 허가를 저해함이 없이, 접근이 제한된 자원에 대한 상업적 어업을 위한 승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선원의 대다수가 외국인인 선박에 승선하는 니카라과인 인력의 점진적 충원에 대하여 국가노동법이 적용될 것이며, 이는 진행 중인 인력 대체로 인한 것이다. 그러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새로 고용된) 니카라과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한다.</p>
--	--

2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소비자, 신용협동조합, 농업, 생산, 노동, 주택, 어업, 공공서비스, 문화, 교육, 청년협동조합 및 주민 혜택을 위한 그 밖의 종류의 협동조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499호, 협동조합 일반법(Ley No. 499 Ley General de Cooperativas), 관보 제17호(2005.1.25)</p> <p>법률 제84호, 농업 및 농공 협동조합법(Ley No. 84, Ley de Cooperativas Agropecuarias y Agroindustriales), 관보 제62호 (1990.3.28)</p> <p>법령 제16-2005호, 법률 제499호 협동조합 일반법에 관한 규정 (Decreto No. 16-2005 Reglamento de la Ley No. 499, Ley General de Cooperativas), 관보 제55호(2005.3.18)</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협동조합의 설립시, 외국 국적 파트너의 비율은 전체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니카라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외국 국민은 니카라과 거주자로서 이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니카라과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시 외국 국적 파트너의 비율은 전체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외국 국민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p>

22. 분야	육상 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24호, 육상 운송 일반법(Ley No. 524, Ley General de Transporte Terrestre), 관보 제72호(2005.4.14) 및 그 개정 법령 제42-2005호, 법률 제524호 육상 운송 일반법에 관한 규정 (Decreto No. 42-2005, Reglamento a la Ley No. 524, Ley General de Transporte Terrestre), 관보 제113호(2005.6.16), 그 개정 및 추가 사항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영역 내 모든 형태의 화물 운송은 니카라과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화물 소유 회사가 니카라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는 외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특수 화물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p> <p>니카라과에 설립된 외국 국제 화물 회사는 다음의 특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는 니카라과인이 소유한다. 2. 회사의 지배 및 관리는 니카라과인이 수행한다. <p>지역 화물은 니카라과 국적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운송될 수 있으며, 니카라과 및 그 당국은 중미 경제 통합체(SIECA) 가입국 국적의 차량 소유주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는 그 출신 국가에서 니카라과 국민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중미 지역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 및 임시 항구로 이동하는 화물의 경우, 그러한 화물의 지역 내 및 국내 운송은 니카라과 국적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상호주의 원칙과 중미 경제 통합체에 의하여 수립된 규정을 준수한다.</p> <p>국가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은 니카라과 영역의 어떠한 지점으로든 니카라과 국적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이동될 수 있다.</p> <p>니카라과인만이 니카라과 내륙에서 공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23.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399호, 수상운송법(Ley No. 399, Ley de Transporte Acuático), 관보 제166호(2001.9.3)</p> <p>법령 제15-49호, 도선서비스에 관한 규정법(Decreto No. 15-49, Ley Reguladora para el Servicio de Practicaje), 관보 제4호(1985.1.5)</p> <p>각료협의 제66-2007호, 국내항구에서 화물 적재 및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회사 및 협동조합의 허가에 관한 규칙 (Acuerdo Ministerial No. 66-2007, Normas para la habilitación de empresas, compañías y cooperativas prestatarias del servicio de estiba y desestiba de carga en los puertos nacionales), 관보 제2호(2008.1.3)</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21-2014호(Resolución DGTA No. 021-2014), 관보 제121호(2014.7.1)</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04-2014호(Resolución DGTA No. 004-2014), 관보 제35호(2014.2.21)</p> <p>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30-2009호(Resolución DGTA No 030-2009), 관보 제63호(2014.4.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선주 또는 선박회사로서 영업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니카라과 국민이어야 하며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운송 대리인, 일반 운송 대리인 또는 운송 수탁 대리인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니카라과인이어야 하며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니카라과 국민 또는 니카라과에서 설립된 회사만이 해상운송에 종사하기 위한 노선 양허를 취득할 수 있다.</p> <p>상업적 목적의 내륙 교통 및 연안 운송을 위한 선박의 운영 및 사용은 니카라과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유보되고 니카라과 국적의 선주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상호주의 조건에 따라, 니카라과 국적 선주는 그 밖에 모든 중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사용할 수 있다.</p>

	<p>니카라과 국민만이 니카라과 내 모든 항구의 공식 도선사로 임명될 수 있다.</p> <p>니카라과 항구에서 화물 적재 및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되고자 하는 기업, 회사 및 협동조합은 다음을 준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니카라과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다. 합자회사의 경우 해당 주식은 기명주식이어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 모든 주식이 관할 공공 등록부 또는 노동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2.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다. 3. 기업, 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화물 적재 및 하역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할 각 항구에 충분한 인적자원 및 숙련된 기술자를 갖춘 상시 사무소를 둔다. 이 요건의 검증을 위하여 사무실 부지에 관한 소유 또는 임대, 그리고 직원의 임명 또는 계약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4. 일반 운송 대리인, 운송 수탁 대리인 또는 통관 대리인이 아니어야 한다. <p>신규 하역회사의 승인은 각 국가 항구에서 그 동안 처리한 물동량, 항구 시설의 운영 능력 및 기존 하역회사의 운영 능력에 따른다. 니카라과 내 항구에서의 신규 회사 운영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승인 위원회에 그 권한이 있다.</p> <p>보트서비스는 수상운송국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발급한 영업 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p> <p>수상운송국이 부여한 영업 면허는 항구 기계장치 및 장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된다.</p> <p>법률 제399호 수상운송법 제3조에 정의된 전문 서비스 또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공식 절차(요건 서류)에 기재된 요건 및 수상운송국 결의안 제030-2009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	--

2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800호, 니카라과 대양간 대운하 관련 법적 제도 및 니카라과 대양간 대운하청 설립에 대한 법(Ley No. 800, Ley del Régimen Jurídico de el Gran Canal Interoceánico de Nicaragua y de creación de la Autoridad de el Gran Canal Interoceánico de Nicaragua), 관보 제128호(2012.7.9)</p> <p>법률 제840호, 니카라과 운하, 자유무역지역 및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및 운송 개발에 대한 특별법(Ley No. 840, Ley Especial para el Desarrollo de Infraestructura y Transporte Nicaragüense Atingente a El Canal, Zonas de Libre Comercio e Infraestructuras Asociadas), 관보 제110호(2013.6.14)</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대운하청은 특별 경제구역에서 이행될 수 있는 경제 활동 및 이러한 각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다.</p> <p>니카라과 대양간 대운하 프로젝트에 포함된 각 하위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니카라과는 대형 인프라개발 주식회사(Empresa Desarrolladora de Grandes Infraestructuras, S.A.) 및 그 양허권자에게 상업적 운영의 개시로부터 50년 동안 기본양허협정에 따른 독점적 양허권을 부여한다. 이 기간은 기본양허협정에 언급된 연장의 적용을 받아 각 경우에 대하여 추가로 50년 동안 연장 가능하며, 그러한 연장은 최초 양허 기간의 종료일 이후 즉시 시작될 것이다.</p>

25. 분야	운송 - 항공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95호, 민간 항공학 일반법(Ley No. 595, Ley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 관보 제193호(2006.10.5)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 등록된 항공기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니카라과의 자연인 또는 법인 <p>공동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항공기 가치의 절반을 초과하는 권리를 보유한 다수는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는</p> <p>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인 경우, 니카라과 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니카라과에 법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p> 2. 니카라과에 영구 주소가 있는 외국 자연인 3. 신용구매계약 또는 구입 옵션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 그 등록 및 재적(在籍)은 잠정적이다.

26. 분야	운송 - 항공운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95호, 민간 항공학 일반법(Ley No. 595, Ley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 관보 제193호(2006.10.5)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에 등록된, 항공운송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기를 소유하려면 니카라과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p> <p>보유한 전문성과 관련된 모든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연인 또는 기업은 항공국(Aviation Authority)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용 가능한 규정, 기술 기준, 그리고 특히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전문성에 따른 기술적 및 경제적 역량 보유, 그리고 2. 니카라과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 <p>니카라과 내에 특정 전문성을 지닌 항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회사 또는 항공기가 없는 경우, 항공 당국은 항공기 및 그 소유자의 니카라과 국적 준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p>

27.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32호, 니카라과 전문직 편입법(Decreto No. 132, Ley de Incorporación de Profesionales en Nicaragua), 관보 제47호(1979.11.2) 국회 법령 제7539호, 「대학 전문직 종사 및 학사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승인 법령(Decreto A.N. 7539, Decreto de Aprobación del “Convenio sobre el Ejercicio de Profesiones Universitarias y Reconocimiento de Estudios Universitarios”), 관보 제131호(2014.7.15)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 전문가는 그러한 전문가의 출신 국가에서 니카라과인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니카라과에서 활동할 수 있다.</p> <p>외국 관할권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또는 증명서의 신청 및 수령을 니카라과 국민에게 허가하는 경우, 니카라과는 그러한 관할권 내에서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증명서를 보유한 외국 국민 또한 니카라과 내에서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면허 또는 증명서를 신청 및 수령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동의한다.</p> <p>또한, 다음의 경우, 니카라과 내 관련 전문가협회는 외국 관할권이 부여한 면허를 인정할 것이며, 그 면허 소지자가 그러한 면허에 기초하여 니카라과 내에서 협회에 등록하고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p> <p>가. 니카라과 내 어떠한 교육기관도 니카라과에서 그 전문직의 수행을 허용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p> <p>나. 면허 소지자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인정 받은 전문가인 경우, 또는</p> <p>다. 니카라과에서 해당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훈련, 시연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통하여 니카라과에서 그 전문직의 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p> <p>출생에 의한 중미 국적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대학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미 국가들 중 한 국가에서 전문가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부 디플로마를 취득한 경우, 그러한 중미국적자는 니카라과에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전문가는 니카라과 대학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다. 상기 규정은 해당하는 인이 중미 국가 중 하나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적용된다.</p>

28. 분야	기업에 제공되는 공공회계 및 감사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호, 공인회계업무수행법(Ley No. 6, Ley para el Ejercicio de Contador Público), 관보 제94호(1959.4.30)</p> <p>법률 제561호,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에 대한 일반법(Ley No. 561, Ley General de Bancos, Instituciones Financieras No Bancarias, y Grupos Financieros), 관보 제232호(2005.11.30)</p> <p>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Ley No. 587, Ley de Mercado de Capitales), 관보 222호(2006.11.15)</p> <p>법률 제733호, 보험, 재보험 및 채권에 대한 일반법(Ley No. 733, Ley General de Seguros, Reaseguros y Fianzas), 관보 제162호(2010.8.25), 제163호(2010.8.26) 및 제164호(2010.8.27)</p> <p>법률 제734호, 일반보세창고법(Ley No. 734, Ley de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s), 관보 제201호(2010.10.21) 및 제202호(2010.10.22)</p> <p>결의안 CD-SIBOIF-739-1-AGOS2-2012호, 외부감사기준(Resolución CD-SIBOIF-739-1-AGOS2-2012: Norma sobre Auditoría Externa), 관보 제211호(2012.11.5)</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계사로 구성된 회사 및 외국 협회는 개인 또는 회사의 형태로, 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해당 전문직 또는 어떠한 관련 활동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다만, 니카라과 공인회계사의 회사 또는 협회를 통하여, 또는 니카라과 내에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둔 외국 회사를 통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은행금융기관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 외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감사법인은 은행금융기관감독원의 외부감사인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p>

29. 분야	전문직서비스 – 공증인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60호, 니카라과 공화국 사법부 기본법 및 그 개정 (Ley No. 260,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137호(1998.7.23)</p> <p>법령 제63-99호, 법률 제260호 니카라과 공화국 사법부 기본법에 관한 규정 및 그 개정(Decreto No. 63-99, Reglamento a la Ley No. 260, Ley Orgánica del Poder Judicial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104호(1999.6.2)</p> <p>법령 제132호, 니카라과 전문직 편입법(Decreto No. 132, Ley de Incorporación de Profesionales en Nicaragua), 관보 제47호(1979.11.2)</p> <p>공증법, 니카라과 민사 소송법 부속서(Ley del Notariado, Anexo al Código Procedimiento Civil de Nicaragua)</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공증서비스를 수행하려는 공증인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고 출생에 의해 니카라과 국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p> <p>출생에 의한 중미 국적 소지자는 니카라과에 최소 5년간 거주한 후 니카라과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도록 승인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국적 소지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도록 허가를 받고, 니카라과인이 그 국적 소지자의 국가에서 공증인으로 활동하도록 승인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p>

30. 분야	관세사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중미 통합 관세규약(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관보 제41호(1966.2.18) 결의안 제24-2008호, 중미 통합 관세규약에 관한 규정(Resolución No. 24-2008, Reglamento del 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관보 제136호(2008.7.17), 제137호(2008.7.18), 제138호(2008.7.21), 제139호(2008.7.22), 제140호(2008.7.23), 제141호(2008.7.24), 및 제142호(2008.7.25) 법률 제265호, 수입, 수출 및 기타 제도에 대한 자동발송수립법(Ley No. 265, Ley que establece el Auto despacho para la Importación, Exportación y otros Regímenes), 관보 제219호(1997.11.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다음의 인만이 재정신용부에서 발급한 면허를 득하여 관세사가 될 수 있다. 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니카라과 국민 나. 관세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세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 가능한 경우 다른 학문 영역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중미국 국민, 또는 다. 니카라과인의 관세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된 국가 출신의 외국 국민 니카라과에서 관세사로서 영업하려는 기업은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하며, 그 관세 기업의 최소 1인의 직원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31. 분야	과학연구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316호, 천연자원개발에 대한 일반법(Decreto No. 316, Ley General sobre Explotación de Nuestras Riquezas Naturales), 관보 제83호 (1958.4.17)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비거주 외국 국민 또는 그 대리인은, 니카라과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조사승인확인서가 요구될 것이다.</p> <p>이 조사승인확인서는 천연자원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사 실시만을 승인한다. 운영 면허 소지자 또는 탐사·개발 양허권자에게 권한이 부여된 업무나 행위는 시행할 수 없다.</p> <p>모든 양허권자 또는 외국 면허 소지자는 충분한 권한을 갖춘 대표자를 항시 니카라과에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p>

32. 분야	자유지역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하위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917호, 자유무역수출지역법(Ley No. 917, Ley de Zonas Francas de Exportación), 관보 제196호(2015.10.16)</p> <p>법률 제382호, 역내가공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임시승인법(Ley No. 382, Ley de Admisión Temporal para Perfeccionamiento Activo y de Facilitación de las Exportaciones), 관보 제70호(2001.4.16)</p>
유보내용	<p><u>투자</u></p> <p>자유지역 사업자는 개인 영역의 자유지역에 속하며, 이러한 자유지역은 그 지역의 관리라는 단일 목적을 지니고 니카라과 법에 따라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것 외에,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조건에 따라 자유지역에서 운영중인 회사의 적절한 운영을 촉진한다.</p> <p>자유무역지역(FTZ) 사용자 회사는 국립자유지역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Zonas Francas)가 그 지역 내 영업을 승인한 모든 사업, 산업 또는 서비스 시설을 의미한다. 모든 자유무역지역 사용자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 운영을 단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는 니카라과 공화국 상법에 수립된 절차에 따라, 자회사 또는 지사를 통하여 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p> <p>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립자유지역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과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신청 회사의 사업 운영 적절성을 고려하여 그 결정을 표명한다.</p> <p>법 규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에 종사하는 회사에 자유지역 내 운영 자격이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니카라과 또는 외국 회사일 수 있다.</p> <p>역내가공 임시 승인의 경우, 총 매출의 최소 25퍼센트를 수출하고 그 수출액이 연간 50,000 중미 페소(CA \$ 50,000.00) 이상인 회사에는, 법과 규정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의 사전 유예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p>

33. 분야	부동산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02호, 니카라과 부동산 중개인법(Ley No. 602, Ley de Correduría de Bienes Raíces de Nicaragua), 관보 제132호(2007.7.12)</p> <p>법령 제94-2007호, 법률 제602호 니카라과 부동산 중개인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94-2007, Reglamento de la Ley No. 602, Ley de Correduría de Bienes Raíces de Nicaragua), 관보 제231호(2007.11.3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부동산 중개인 허가를 신청하는 인은 니카라과 시민이거나, 근로 제한 없는 적절한 거주 증명서/카드를 보유하고 니카라과 내에 합법적인 영구 거주지를 지닌 외국 국민이어야 한다.</p> <p>부동산중개인협회는 승인 받은 중개인 및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또한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된다.</p> <p>니카라과 영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국제 부동산 중개회사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니카라과 국적의 자연인 또는 부동산 중개 법인이어야 한다.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제 회사를 대표하고 니카라과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것이다.</p>

34. 분야	음용수, 위생 하수도 시스템, 하수 수집 및 처리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69호(2007.9.4)</p> <p>법률 제276호, 니카라과 상하수도공사(ENACAL) 설립법(Ley No. 276: Ley de Creación de la Empresa Nicaragüense de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Sanitarios - ENACAL), 관보 제12호(1998.1.20) 및 그 개정</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식수 공급 및 분배, 그리고 폐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공공 사업의 수립, 건설 및 개발은 니카라과 상하수도공사만 수행할 수 있다.</p> <p>니카라과 상하수도공사는 음용수의 공급 및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음용수의 수집, 처리, 관리, 저장, 분배 및 판매, 폐수의 수거, 처리 및 최종 처리 나. 천연수 구매, 음용수의 구매 및 판매, 폐수 수거·처리·최종 처리 서비스의 상업화 다. 처리된 폐수의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라. 공사의 단기, 중기 및 장기 확장계획 개발 마. 수자원 관련 연구, 탐사, 개발 및 이용, 그리고 바. 개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활동 수행

35. 분야	공항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1292호, 국제공항관리공사법(Decreto No. 1292, Ley de la Empresa Administradora de Aeropuertos Internacionales), 관보 제186호(1983.8.16) 및 그 개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제공항 내 업무 수립, 운영, 관리 및 집행,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국제공항관리공사의 의무이다.

36. 분야	에너지 - 송전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91호, 법률 제788호 「니카라과 송배전공사(ENATREL) 설립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법(법률 제583호)과 전력산업법(법률 제272호) 및 행정부조직역량절차법(법률 제290호)에 대한 개정」에 관한 개정 (Ley No. 791, Ley de Reforma a la Ley No. 788, Ley de Reforma y Adición a la Ley No. 583, Ley Creadora de la Empresa Nacional de Transmisión Eléctrica, ENATREL y de Reformas a las Leyes No.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y No. 290 Ley de Organización, Competencia y Procedimientos del Poder Ejecutivo), 관보 제60호(2012.3.2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의 분권화된 공기업으로서, 니카라과 송배전공사(Empresa Nacional de Transmisión Eléctrica - ENATREL)만이 전력송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7. 분야	공공통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58호, 니카라과 우편 및 우편서비스 일반법(Ley No. 758, Ley General de Correos y Servicios Postales de Nicaragua), 관보 제96호(2011.5.26) 및 제97호(2011.5.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우표의 발행, 금융 및 상업화, 그리고 소인기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스템의 사용은 니카라과 우체국(Correos de Nicaragua)에 유보된다.

38.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08-2013호, 법률 제801호 지방 행정 계약법에 관한 일반규정 (Decreto No. 08-2013, Reglamento General a la Ley No. 801, Ley de Contrataciones Administrativas Municipales), 관보 제24호(2013.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부문은 계약대상 물품에 대한 규격 수립 시,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장려할 것이다.

39. 분야	통신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1995.8.18) 및 그 개정</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무선 전기 스펙트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양허, 면허, 인가 또는 기록의 부여는 스펙트럼의 가용성 및 그 사용 관련 정책에 따른다.</p> <p>해상 및 항공 통신서비스는 니카라과 군대(Ejército Nacional) 및 민간 항공국(Dirección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에 의하여 허가, 설치, 운영 및 통제된다.</p> <p>니카라과를 대표하는 국제통신기관은 니카라과 정보통신우편청이다.</p> <p>국가 안보 목적상, (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통신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수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방의 목적상, 니카라과 영역 내 통신 지점은 니카라과의 자산이다. (다) 무선 스펙트럼 및 위성은 니카라과의 소유이며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고, 해당 사안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p>

40. 분야	전력 생산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72호, 전력산업법(Ley No. 272, Ley de la Industria Eléctrica), 관보 제74호(1998.4.23) 및 그 개정과 추가 사항</p> <p>법률 제911호, 법률 제554호 에너지 안정법 및 법률 제898호 소비자 전력 변동률에 대한 개정법(Ley No. 911, Ley de Reformas a la Ley No. 554, Ley de Estabilidad Energética y a la Ley No. 898, Ley de Variación de la Tarifa de Energía Eléctrica al Consumidor), 관보 제178호(2015.9.22)</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전력 발전 분야에 참여하려는 회사는 니카라과 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p> <p>전력 발전에 종사하는 경제적 대리인, 자회사 또는 주주는 전력 송전 및 /또는 배전 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다만, 니카라과 전력공사는 비양허지역에 한하여 전력 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p> <p>발전업체는 전선 또는 송전 장비의 소유자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사의 발전소를 국가종합전력망시스템과 연결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이차 송전 시스템으로 간주될 것이다.</p> <p>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전력 발전 신규 계약은 각 발전 유형별로 지정된 가격을 따른다.</p>

41. 분야	천연 자원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니카라과 공화국 정치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p> <p>법률 제217호, 환경 및 천연자원 일반법(Ley No. 217, Ley General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관보 제105호(1996.6.6)</p> <p>법령 제316호, 천연자원개발에 대한 일반법(Decreto No. 316, Ley General sobre Explotación de Nuestras Riquezas Naturales), 관보 제83호(1958.4.17)</p> <p>법률 제620호, 국가수자원 일반법(Ley No. 620, Ley General de Aguas Nacionales), 관보 제169호(2007.9.4)</p> <p>법률 제749호, 국경법률시스템법(Ley No. 749, Ley del Régimen Jurídico de Fronteras), 관보 제244호(2010.12.22)</p> <p>법률 제462호, 임업부문 보존·개발·지속가능발전법(Ley No. 462, 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관보 제168호(2003.9.4)</p> <p>법률 제286호,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특별법(Ley No. 286, Ley Especial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관보 제109호(1998.6.12) 및 그 개정</p> <p>법률 제443호, 지열 자원 탐사 및 개발법 및 그 개정(Ley No. 443, Ley d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Recursos Geotérmicos), 관보 제222호(2002.11.21) 및 그 개정</p> <p>법률 제883호, 니카라과 석유공사(PETRONIC) 기본법 및 그 통합 개정(Ley No. 883, Ley Orgánica de la Empresa Nicaragüense de Petróleos - PETRONIC, con sus reformas incorporadas), 관보 제239호(2014.12.1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천연 자원은 국가 유산의 일부이다. 환경 보존 및 천연 자원의 보존, 개발 및 합리적 이용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는 국익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법률에 명시된 천연 자원의 영역, 사용 및 개발은 법률 표현의 규제를 받는다.</p> <p>니카라과 관할권에 속하는 해상 수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액체</p>

	<p>또는 기체 탄화수소 매장층, 그리고 국가 안보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역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채굴 효과의 요건을 갖춘 매장층의 탐사, 개발 및 혜택은, 각 경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요건 및 조건을 따른 행정 양허 또는 특별 운영 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	--

42. 분야	지도의 정교성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311호, 니카라과 영역연구청(INETER) 기본법(Ley No. 311, Ley y Orgánica del Instituto Nicaragüense de Estudios Territoriales - INETER), 관보 제143호(1999.7.28) 및 그 개정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 영역연구청(INETER)은 공식, 토지, 도시 및 농촌 지도, 그리고 다양한 축척의 주제 지도 및 니카라과 수로·해상·항공 차트의 개발, 갱신, 편집 및 발행을 담당한다.</p>

43. 분야	복권 관리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국가 복권에 대한 내부 규정(Reglamento Interno de la Lotería Nacional), 관보 제229호(1996.1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가만이 직접 자선 목적으로 복권 게임 및 사행성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 국영회사인 국립복권(National Lottery)만 복권 관리 및 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4. 분야	항구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838호, 니카라과 항구 일반법 및 그 규정(Ley No. 838, 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y su Reglamento), 관보 제92호 (2013.5.21)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국익에 관련된 항구의 관리 및 운영은 니카라과 항만청(Empresa Portuaria Nacional - EPN)에 유보된다.</p> <p>항만청은 모든 공공 항구를 포함하는 국가 항구 시스템의 관리 당국이다. 항만청은 국가 소유의 항구 및 법률 제838호의 절차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가 부여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및 여객의 국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항구의 관리 기관이다. 또한 항만청의 관리 및 통제를 받는 지역 이익에 관련된 항구, 그리고 추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항구에서도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다.</p> <p>공화국의 대통령은, 전략적 이익의 목적상 항만청을 통하여, 신규 공용(公用) 항구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러한 항구가 위치하는 대서양 연안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공공 또는 민간 법적 실체에 수상운송국의 기술 승인에 앞서 양허 및 제휴의 형태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p> <p>대서양 연안의 자치구역에 부여되는 이용 및 항구 개발을 위한 양허 및 계약은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조항 및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p> <p>자치구역(대서양 연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 투자자와 항만청 간 서명될 법률 문서는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조항에 따라 자치구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양허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은 니카라과 공화국의 법에 의해서만 배타적인 규제를 받을 것이다. 계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 간의 우호적인 합의 2) 대법원 내 대안분쟁해결부(Directorat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통한 조정, 또는 3) 니카라과공화국 법에 따른 중재

부속서 II

니카라과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니카라과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는 기존의 공기업이 보유한 어떠한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을 제한하여 니카라과 국민만이 그러한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전술한 절은 그러한 지분의 최초 양도 또는 처분에만 적용된다. 니카라과는 그러한 지분의 후속적인 양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이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한다.</p> <p>니카라과는 지분소유권에 대한 제한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전술한 항에 명시된 어떠한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니카라과는 또한 그러한 새로운 기업의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 분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및 원주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 및 원주민에게 권리 또는 선호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커뮤니케이션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 (1995.8.18)</p> <p>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 (1996.9.19)</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는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및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전자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니카라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 또는</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사안</p>

5. 분야	연안토지, 섬 및 강둑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p><u>투자</u></p> <p>니카라과는 니카라과의 소유 하에 있는 연안토지, 섬 및 강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6.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실업 보험, 사회 보험 및 보장,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

7.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중소기업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니카라과는 중소기업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우편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58호, 니카라과 우편 및 우편서비스 일반법(Ley No. 758, Ley de Correos y Servicios Postales de Nicaragua), 관보 제96호 및 제 97호(2011.5.26 및 2011.5.27)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우편서비스, 국제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행위 및 국제기구 내 니카라과의 대표는 정부가 임명한 운영자인 니카라과 우정국 (Correos de Nicaragua)에 유보된다.</p>

9.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전기 발전, 배전 및 상업화 분야의 모든 회사에 대한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화석연료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화석연료의 연구, 이용 및 그 공급 분야의 모든 회사에 대한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속서 III

니카라과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니카라과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1목부터 5목까지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니카라과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니카라과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1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지는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의 자유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또는 해당하는 경우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니카라과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제1절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에 대한 니카라과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니카라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3. 제11.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니카라과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니카라과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니카라과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비합치 조치)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²

¹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니카라과에서 예금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²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61호,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에 관한 일반법 (이하 “은행법”이라 한다)(Ley No. 561, Ley General de Bancos, Instituciones Financieras no Bancarias y Grupos Financieros), 관보 제232호 (2005.11.30)</p> <p>결의안 제CD-SIBOIF-473-1-ABR11-2007호, 은행, 금융회사, 외국 은행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요건에 관한 기준(Resolución N° CD-SIBOIF-473-1-ABR11-2007, Norma Sobre Los Requisitos para la constitución de Bancos, Sociedades Financieras, Sucursales de Bancos Extranjeros y Oficinas de Representación) (Norma de Constitución)</p> <p>법률 제551호, 예금보증제도법(Ley No. 551, Ley del Sistema de Garantías de Depósito), 관보 제168호(2005.8.30) 및 그 개정</p> <p>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Ley No. 587, Ley de Mercado de Capitales), 관보 제222호(2006.11.15)</p> <p>법률 제899호, 투자회사법(Ley No. 899, Ley de Sociedades de Inversión), 관보 제76호(2015.4.27)</p>
유보내용	<p>은행 업무는 회사로 설립되고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 법적 실체,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은행지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p> <p>외국은행이 니카라과 내 당행 지점에 할당한 자본금은 니카라과 기관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며 실제로 지급되고 니카라과에 유입된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7조 및 「헌법규칙」(Norma de Constitución) 제11조가호</p> <p>외국은행 지점은 니카라과 내 지점에 할당된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표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표하거나 명시할 수 없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8조</p> <p>니카라과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의 행정 및 법률대리는 적법한 승인을 받고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행정가 및 관리자가 담당할 것이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32조</p> <p>니카라과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외국은행 지점의 법적 주소지는 니카라과이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3조</p>

	<p>해외에서 설립되어 니카라과에 지점을 개설하는 은행은 니카라과 내 자신의 지점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채널을 이용할 수 없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3조</p> <p>니카라과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금이 있는 경우, 그 자본금은 사업의 청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은행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외로 송금될 수 있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26조</p> <p>니카라과에 지점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국내법에 따라 청산되는 경우, 그러한 지점 역시 청산될 것이다. 「예금보증제도법」 제77조</p> <p>외국은행의 지점 개설 신청은 양 당사국의 감독기관 간에 기관정보가 교환될 수 있고 모은행이 인가를 받은 국가에서 5년을 초과하여 운영되었으며 금융은행중개 업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합병으로 시작된 외국은행의 경우, 가장 오래된 실체의 운영연수가 운영연수로 계산될 것이다. 「헌법규칙」 (Norma de Constitución) 제8조. 외국은행의 대표 사무소는 대출 및 투자 형태로 니카라과 내에 자금을 둘 수 있으며 고객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니카라과의 공중으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률 제561호, 「은행법」 제14조</p> <p>주식시장의 경우, 주식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니카라과인 또는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것이 요구되며,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 제69조</p> <p>외국 국민이 외부감사를 이행하고 은행감독원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실체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등록을 포함한 니카라과 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	--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비은행 금융기관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금융회사, 신용카드 발행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소, 중개회사, 투자자금 관리회사, 증권화 펀드관리회사, 증권중앙예탁기관, 청산 및 결제기관, 전자화폐를 운영하는 기업 및 특별제도를 채택한 금융기관(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61호,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에 관한 일반법 (Ley No. 561, Ley General de Bancos, Instituciones Financieras no Bancarias y Grupos Financieros), 관보 제232호(2005.11.30)(은행법)</p> <p>법률 제515호, 신용카드 사용 촉진 및 규제에 관한 법(Ley No. 515, Ley de Promoción y Ordenamiento del uso de la Tarjeta de Crédito), 관보 제11호(2005.1.17)</p> <p>결의안 제CD-SIBOIF-629-4-MAY26-2010호, 신용카드 운영 기준 (Resolución N° CD-SIBOIF-629-4-MAY26-2010, Norma para las Operaciones de Tarjetas de Crédito), 관보 제150호 및 제151호(2010.8.9 및 2010.8.10)</p> <p>법률 제587호, 자본시장법(Ley No. 587, Ley de Mercado de Capitales), 관보 제222호(2006.11.15)(자본시장법)</p> <p>결의안 제CD-SIBOIF-671-1-MAR30-2011호, 전자화폐로 운영하는 기업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기준(Resolución N° CD-SIBOIF-671-1-MAR30-2011, Norma para la Autorización y Funcionamiento de Entidades que operan con Dinero Electrónico)(전자화폐 기업 기준), 관보 제79호 및 제81호(2011.5.3 및 2011.5.5)</p> <p>법률 제734호, 일반예탁창고법(Ley No. 734, Ley de Almacenes Generales de Depósitos), 관보 제201호 및 제202호(2010.10.21 및 2010.10.22)(창고법)</p>
유보내용	<p>금융기관(「은행법」 제4편), 일반 보세창고(법률 제734호 제7조 및 제13조, 「창고법」), 증권거래소(「자본시장법」 제36조), 중개회사(「자본시장법」 제63조), 투자자금 관리회사(「자본시장법」 제74조), 증권화 펀드관리회사(「자본시장법」 제122조), 중앙증권예탁기관(「자본시장법」 제139조), 청산 및 결제기관(「자본시장법」 제154조), 전자화폐로 운영되는 기업(「전자화폐 기업 기준」) 및 특별제도를 채택한 금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면, 해당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니카라과에서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적법하게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지점으로 설립되어야 한다.</p> <p>외국에 설립된 비은행 금융기관이 니카라과 지점에 할당하는 자본금은 실제로 지급되고 니카라과에서 송금되어야 한다. 예금의</p>

	<p>형태로 공공자원을 확보하는 이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점은 모기업의 자본금 및 준비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이행할 수 없다.</p> <p>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 하위분야에 규정된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조치에 기재된 법을 참조한다.</p>
--	--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33호, 보험, 재보험 및 채권 일반법(Ley No. 733, Ley General de seguros reaseguros y fianzas), 관보 제162호, 제163호 및 제164호 (2010.8.25, 2010.8.26 및 2010.8.27)</p> <p>결의안 제SIB-OIF-IV-26-96호, 보험중개 및 중개기능 행사 허가에 관한 규제 규칙(Resolución: SIB-OIF-IV-26-96, Normas Regulatorias para la autorización de intermediarios de Seguros y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de intermediación), 관보 제13호(1997.1.20)</p>
유보내용	<p>보험 및 재보험 업무는 회사로 설립되고 니카라과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제기관이 승인한 법적 실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보험법」 제9조</p> <p>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보험사(보험, 재보험, 보증 및 재통합)는 지점을 설립하여 니카라과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 「보험법」 제20조</p> <p>해외에서 설립되어 니카라과에 지점을 설치한 보험사는 모든 법적 효력상 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법」 제24조</p> <p>니카라과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보험사 지점의 주소지는 니카라과가 될 것이고, 그들은 니카라과 공화국에 설립된 법률 대리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보험법」 제24조</p> <p>해외에서 설립되어 니카라과에 지점을 설립한 보험사는 니카라과에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채널을 이용할 수 없다. 「보험법」 제24조</p> <p>니카라과에 주소지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수출 및 수입 운송 또는 니카라과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해에 대한 보험인 경우, 그리고 문제가 되는 특정 보험이 니카라과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승인된 기관이 입증한 경우, 또는 이러한 기관이 그러한 위험에 적용되는 승인된 보험상품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니카라과에서의 운용을 위하여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험법 제174조</p> <p>니카라과에서 보험중개에 종사하거나 보험대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니카라과에 거주하여야 하고 노동허가를 보유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법」 제115조</p>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1.4조)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니카라과는 니카라과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외국 법에 따라 조직된 금융기관의 니카라과 내 설립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p>니카라과는 금융기관에게, 또는 농업생산 금융, 저소득층 대상 주택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가가 지분의 전부 또는 다수를 소유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적 기관에게 혜택을 부여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혜택은 상업적 경쟁사의 핵심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정부보증의 연장, 면세, 통상적인 법적 형태 요건 및 운영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예외.</p>

부속서 I

파나마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파나마의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파나마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5조(현지주재)
- 라. 제9.9조(이행요건)
-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파나마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이 협정의 목적상, 파나마는 다음을 양해한다.

파나마의 관할권 수역에서의 어업 및 관련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의무에 대하여 부속서 I 및 II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1.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소매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293조 법률 제5호(2007.1.11) 제5조 및 제10조 행정부령 제26호(2007.7.12) 제12조
유보내용	<p><u>투자</u></p> <p>1. 다음의 인만이 파나마에서 소매업을 소유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출생에 의한 파나마 국민 나. 1972년 헌법 발효일 기준 귀화하였고 파나마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파나마 국민과 자녀를 둔 자연인 다. 귀화에 의한 파나마 인으로 귀화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나호의 설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파나마 법인 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1972년 헌법 발효일 기준 국내법에 따라 파나마에서 소매업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인 자연인, 그리고 마. 파나마 또는 그 밖의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1972년 헌법 제293조제5항에 규정된 대로, 가호, 나호, 다호 또는 라호에 기술된 자연인이 소유한 법인 <p>2. 다만, 소매업을 소유하도록 권한 받지 아니한 외국 국민은 해당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참여할 수 있다.</p> <p>3. 소매업의 고위경영진 및 이사는 소매업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국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2.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290조 및 제291조
유보내용	<p><u>투자</u></p> <p>1. 외국 정부, 외국 공무원 또는 외국 공기업은 대사관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파나마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p> <p>2.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국민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파나마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파나마 국경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p>

3. 분야	공공설비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285조
유보내용	<u>투자</u> 파나마에서 운영되는 공공설비에 종사하는 민간기업 자본의 다수는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파나마 인이 소유한다.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322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 운하관리청의 계약직은 외국 국민보다 파나마 국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해당 직위를 충원하기 어렵고 자격을 갖춘 파나마 국민을 고용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고갈되었으며 운하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나마 국민 대신 외국 국민을 고용할 수 있다. 파나마 운하관리청 채용 직위의 유일한 지원자가 외국 국민인 경우, 파나마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 국민 또는 파나마에서 10년 동안 연속으로 거주한 외국 국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p> <p>2.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 운하관리청의 이사가 될 수 있다.</p>

5. 분야	예술 활동
하위분야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연주자 및 예술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10호(1974.1.8) 제1조 행정부령 제38호(1985.8.12) 제1조 및 제2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외국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외국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이 공연하는 각 장소에서 공연하기 위하여 파나마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외국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의 계약 기간 동안 존재한다. 이 파나마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은 각 공연마다 최소 미화 1,000달러를 받아야 한다. 각 단원은 이 금액 중 미화 60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p> <p>2. 외국 예술가와 함께 공연하는 파나마 예술가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용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된 매체와 관계없이 행사와 관련된 판촉, 홍보 및 광고에 적용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p> <p>3. 판촉을 위하여 외국 예술가를 고용하거나 외국 예술가의 서비스 또는 작품을 자선기부 또는 교환하는 행위는 파나마 예술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파나마 예술가를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승인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수수료 및 회비 납부의 목적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및 업무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평가를 위하여 그 고용건을 제출하여야 한다.</p>

6. 분야	통신
하위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의 정치 헌법 제285조 법률 제24호(1999.6.30) 제14조 및 제25조 행정부령 제189호(1999.8.13) 제152조 및 제161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 내에서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는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부여될 수 있다. 자연인의 경우, 양허권자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양허권자 주식의 최소 65퍼센트 이상을 파나마 국민이 소유하여야 한다.</p> <p>2.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기업의 각 고위 관리자 및 이사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p>3.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공기업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p> <p>4.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서비스의 양허권자는 공공서비스 청이 발행한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아나운서의 발표를 포함하는 파나마 내에서 시작된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이는 파나마 국민 또는 파나마 국민에게 상호 권리를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서만 취득될 수 있다.</p>

7. 분야	통신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31호(1996.2.8) 제21조
유보내용	<p><u>투자</u></p> <p>외국 정부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 또는 외국 정부를 파트너로 두고 있는 기업은 파나마의 영역에서 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p>

8. 분야	교육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의 정치 헌법 제10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의 영역에서 파나마 역사 및 시민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

9. 분야	전기에너지
하위분야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6호(1997.2.3) 제32조, 제45조 및 제46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 영역 내의 송전서비스는 파나마 정부만이 공급할 수 있다.</p> <p>2. 파나마 영역 내의 배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청이 부여한 허가에 따라 15년간 3개의 기업에서 공급될 것이다.</p> <p>3. 전력회사 이사회 구성원은 파나마 국민일 것이 요구되며, 국가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51퍼센트 이상 소유한다.</p>

10. 분야	원유, 탄화수소 및 천연가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8호(1987.6.16) 제2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71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계약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 파나마 공화국에서 설립 또는 지점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p> <p>2.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다음의 경우 상품 또는 계약 서비스를 외국에서 획득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그 상품 또는 서비스가 파나마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p> <p style="padding-left: 40px;">나. 파나마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통상산업부의 탄화수소국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그 산업에서 요구되는 일반 규격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p>

11. 분야	광산 운영
하위분야	비금속, 금속(귀중한 광물 제외) 광물, 귀중한 층적 광물, 귀중한 비층적 광물, 연료 광물(탄화수소 제외) 및 예비 광물의 추출 및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23호(1963.8.22) 제4조, 제5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5조 법률 제3호(1988.1.28) 제11조 법령 제30호(2011.2) 제1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외국 정부, 외국 공기업 또는 외국 정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참여가 있는 법인은 다음을 할 수 없다.</p> <p>가. 광업 허가를 획득하는 것</p> <p>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광업 운영의 계약자가 되는 것</p> <p>다. 광업 허가를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 또는</p> <p>라. 내각 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파나마 공화국 대통령령을 통하여 사전 및 특별 허가 없이 장비 또는 자재를 파나마 내 광업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지 또는 보유하는 것</p> <p>2. 파나마는 노동법에 따라 광업 운영의 모든 단계의 직위에 대하여 파나마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p> <p>3. 광업 허가 보유자와 광업 운영에 종사하는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외국 국민을 경영, 과학 또는 기술 전문가로 고용할 수 있다.</p> <p>가. 광업 운영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외국 국민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p> <p>나. 외국 국민이 피고용인 수의 25퍼센트 미만을 구성하고 외국 국민이 받는 보수가 총 보수의 25퍼센트 미만인 경우</p> <p>1) 광업 허가 보유자의 경우, 추출, 혜택 또는 운송 허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업 운영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p> <p>2) 계약자의 경우, 광업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p>

	<p>4. 광업자원 총국은 외국인이 광업에 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할 것이다.</p> <p>5. A급 건물의 탐사 또는 채굴을 위한 허가만을 보유한 인을 제외한 모든 양허권자는 미숙련 노동자 및 반숙련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광업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파나마의 광물자원국이 감독하는 파나마인 직원들에게 비용,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p>
--	---

12. 분야	건설에 사용되는 비금속 광물, 세라믹, 내화성 및 금속재료의 탐사 및 개발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109호(1973.10.8) 제3조 법률 제32호(1996.2.9) 제7조
유보내용	<p><u>투자</u></p> <p>1. 파나마 국민 또는 파나마 기업만이 석회암, 모래, 원석, 침전 석회암, 점토, 자갈, 파편, 장식, 석고 반죽 및 그 밖의 비금속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계약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p> <p>2. 다음은 제1항에 언급된 계약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 운영하거나 그러한 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외국정부 또는 공기업, 또는</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그 행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인</p>

13. 분야	어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8호 파나마 공화국 재정법(1956.1.27) 제286조 법률 제20호(1994.8.11) 법령 제17호(1959.7.9) 제5조 및 제6조 법령 제116호(1980.11.26) 제1조 행정부령 제124호(1990.11.8) 제3조 행정결의안 제3호(2004.1.7) 행정부령 제239호(2010.7.20) 제3조
유보내용	<u>투자</u> 1.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 영역에서 잡힌 파나마 어류를 소비를 위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파나마 인이 소유한 선박만이 연안(수작업)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3. 파나마 인이 최소 75퍼센트를 소유하고 파나마 영역 내에서 국제 참다랑어 무역에 종사하는 파나마 국적 선박만이 특혜 요금을 위한 참다랑어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4. 파나마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파나마 영역에서 상업적 또는 산업적 새우 어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4.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민간보안기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21호(1992.1.31) 제4조 및 제10조 행정부령 제22호(1992.1.31) 제1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 회사의 소유자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인은 이 부속서에 기술된 소매업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 영역에서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자의 직위를 가질 수 있다. 파나마 영역에서 보안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 국민은 파나마 정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15. 분야	광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189호(1999.8.13) 제152조 행정부령 제273호(1999.11.17) 제1조, 행정부령 제641호(2006.12.27) 제1조에 의하여 개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및 영화를 위한 광고 방송 중 그 음성 대역이 아나운서 면허를 소지한 파나마 인에 의하여 녹음된 광고의 사용은 전송, 상영 및 사용 기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16.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도선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결의안 J.D 제020-2003호 제44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파나마 국민만이 견습 도선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운하 또는 항구 도선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다.</p>

17. 분야	해상 운송 서비스 및 해상 운송 보조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8호(1998.2.26) 제4조, 제15조 및 제18조 법률 제56호(2008) 제43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계약 서비스 공급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나마인이 등록된 국제 서비스 전용 선박의 소유자는 파나마 국민, 파나마 국민의 배우자 및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파나마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p> <p>2. 조선소 및 파나마 해운회사 협회는 파나마 국민, 파나마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파나마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교육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위한 장학금 및 시설을 제공하도록 한다.</p> <p>3. 파나마에서 운영되는 외국인력회사는 모든 사법·사법외 및 행정 업무에서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파나마 국민을 지정하여야 한다.</p> <p>4. 파나마에 설립된 직업알선기관은 되도록이면 파나마인 선원 또는 파나마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p> <p>5. 파나마 영해에서 운영하는 파나마 해상 운송 보조서비스 선박의 선원 수의 90퍼센트 이상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18.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21호(2003.1.29) 제79조, 행정부령 제542호(2005.11.24)에 의하여 규정
유보내용	<p><u>투자</u></p> <p>1. 파나마에 운영 본부를 두고 있는 파나마 인만이 파나마에서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용 허가증을 보유할 수 있다.</p> <p>2. 제1항에 언급된 허가증 취득을 위하여, 파나마 기업은 그 기업의 실질적 자산 및 실효적 지배가 파나마 국민의 소유라는 것을 민간항공청에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최소 51퍼센트는 파나마 국민이 소유한 기명주식이어야 한다.</p> <p>3. 국내 운송에 있어서, 제2항에 명시된 비율은 최소 60퍼센트이다.</p> <p>4. 제1항에 언급된 허가증이 유효한 동안, 허가증 소유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파나마 국민에 의한 최소 소유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p>

19. 분야	특수 항공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21호(2003.1.29) 제43조 및 제45조, 법률 제89호(2010.12.1) 제13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 제89호(2010.12.1) 제2조 및 제3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 항공사는 파나마인 조종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89호(2010) 제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항공사는 외국인 조종사를 기술자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파나마 공화국의 해당 항공사의 총 직원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p> <p>2. 파나마 국민만이 항공기술담당자 및 기술승무원으로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파나마 국민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인력개발부는 요구되는 대로 항공사 전체 직원의 15퍼센트까지의 외국 인력이 그러한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p>

20. 분야	출판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67호(1978.9.19) 제9조
유보내용	<p><u>투자</u></p> <p>1. 다음은 신문이나 잡지를 포함한 파나마 정보통신 대중매체의 일부인 인쇄물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된다.</p> <p>가. 파나마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100퍼센트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고</p> <p>나. 출판인, 편집장, 부회장 및 부관리자를 포함하는 기업 관리자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21.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서비스 - 법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9호(1984.4.18) 제3조 및 제16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대법원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p> <p>2.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이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p> <p>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의 명확한 조건상 허용된 경우, 외국 국민인 변호사는 국제법 및 해당 변호사가 법률 실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관할권의 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외국 변호사는 제4항가호에 열거된 기관에 대해서는 파나마 영역에서 변호를 제공할 수 없다.</p> <p>4. 이 유보의 목적상,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민사, 형사, 노동, 아동복지, 선거, 행정 또는 해상 관련 법정에서의 법률 대리인 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 자문 제공 다. 법률 문서 및 계약서 작성, 그리고 라.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모든 활동

22.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7호(1978.9)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공인회계사</p> <p>법률 제7호(1981.4.14) 제3조, 경제학자</p> <p>결의안 제168호(1988.7.25)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기술경제협의체에 관한 규정 승인</p> <p>법률 제67호(1978.9.19)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언론인</p> <p>법률 제21호(2005.6.16) 제4조, 홍보 전문가</p> <p>법률 제55호(2002.12.3) 제5조, 심리학 관련 규정</p> <p>법률 제51호(2005.12.28) 제55조, 전문가 및 보건의료기사</p> <p>법률 제1호(1996.1.3) 제2조 및 제3조, 사회학</p> <p>법률 제17호(1981.7.23) 제3조, 사회복지사</p> <p>법률 제20호(1984.10.9) 제3조, 도서관학 전문가 관련 규정</p> <p>법률 제59호(1998.7.31) 제2141조, 행정법 제17편, 제2140조, 제2141조 및 제2142조의 명칭 개정 및 공인 번역가에 관한 법률 제33호(1984) 제13조 폐지</p> <p>제8권, 승무원을 제외한 항공 직원의 면허 취득에 관한 제JD-012호 결의안(2009.2.20) 및 제JD-046호 결의안(2010.11.25)으로부터 채택</p> <p>법령 제1호(2008) 제44조, 관세사 면허 관련</p> <p>행정명령 제6호(1999.7.8)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 중개인</p> <p>법률 제23호(1997.7.15) 제198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승인, 부속서 및 약속 양허표를 포함한 이 협정에 대한 파나마의 가입 의정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내법 조정 및 주식 중개인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그 밖의 조항 제정</p> <p>법률 제22호(1961.1.30)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전문 농업서비스 관련</p> <p>내각령 제362호(1969.11.26) 제4조 및 제16조, 영양학자 및 영양사</p>

<p>법률 제34호(1980.10.9) 제5조, 음성 청력학자, 언어 치료사 및 청력검사자 또는 청각학 기술자</p> <p>법률 제3호(1983.1.11) 제1조 및 제8조, 수의학</p> <p>내각령 제196호(1970.6.24) 제1조, 의료활동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제약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의료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 수립</p> <p>결의안 제1호(1987.1.26), 이에 의거하여 기술보건위원회는 침술을 파나마의 의학 및 치의학 전문의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분류</p> <p>법령 제32호(1975.2.17) 제3조 및 제4조, 의료 보조원</p> <p>법률 제22호(1956.2.9) 제1조, 치과학</p> <p>장관령 제16호(1969.1.22) 제10조, 의료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및 치과 전문의에 관한 규정 및 일반의 및 의료 컨설턴트 직위 신설</p> <p>결의안 제1호(1983.3.14) 제3조, 치과학 전문의에 관한 규정 승인</p> <p>법률 제13호(2006.5.15) 제5조 치과 기공사의 직무 수행 관련</p> <p>법률 제66호(1947.11.10) 제37조, 제108조, 제197조 및 제198조, 보건법 승인</p> <p>법률 제1호(1954.1.6) 제9조, 면허 간호사에 대한 직업 안정성 부여 및 퇴직 간호사의 연금 규정</p> <p>법률 제74호(1978.9.19) 제3조, 임상실험실 근무자, 법률 제8호(1983.4.25) 제1조에 의하여 개정</p> <p>법률 제48호(1984.11.22) 제4조, 보건부 및 사회보장기금재단이 운영하는 임상실험실에 근무하는 보조원 및 지원요원과 그에 대한 규정</p> <p>법률 제47호(1984.11.22) 제7조, 제13조, 및 제15조, 물리치료 및/또는 운동학</p> <p>법령 제8호(1967.4.20) 제2조, 척추 지압사</p> <p>법률 제42호(1980.10.29) 제6조, 의료 방사선사, 법률 제53호(2009.9.18) 제5조에 의하여 개정</p> <p>법률 제13호(1984.8.23) 제6조, 공중보건기관에 고용된 의료기록 및 보건통계 전문가, 그에 대한 임금 체계 규제 및 그 밖의 규정 수립(의료기록 및 보건통계 전문가, 의료기록기사 및 보건통계기사의 보조인력)</p> <p>결의안 제1호(1985.4.15), 정형외과 및 핵의학 기술자</p> <p>결의안 제2호(1987.6.1), 신경생리학 기사, 뇌조영 기사 및 신경전도검사 또는 유발전위 기사</p>
--

<p>법률 제36호(2010.8.2) 제6조, 작업치료 분야 인정</p> <p>결의안 제1호(1988.2.8), 직업보건기사</p> <p>결의안 제10호(1992.3.24) 제2조, 호흡기 치료 기사 또는 호흡기 헤일로(halo)치료 기사</p> <p>결의안 제19호(1991.11.12) 제3조, 보철교정 기술자</p> <p>결의안 제7호(1992.12.15) 제2조, 조직학 업무 및 조직학 보조 인력 및 세포학 보조 인력에 관한 규정</p> <p>법률 제27호(2009.5.22)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조직학 업무에 관한 규정</p> <p>결의안 제50호(1993.9.14) 제2조, 방사선 보건 기사</p> <p>결의안 제1호(1994.1.21) 제2조, 심혈관 관류 기사</p> <p>결의안 제2호(1994.1.25) 제2조, 의료정보기술 관련 기사 및 보조 기사</p> <p>결의안 제4호(1996.6.10) 제2조, 의료 방사선학 보조 기사</p> <p>결의안 제5호(1996.6.10) 제3조, 보건부에서 응급의료 기사 업무 인정</p> <p>결의안 제1호(1998.5.25) 제3조, 응급수술 전문의</p> <p>결의안 제2호(1998.5.25) 제3조, 인류유전학 기사</p> <p>법률 제24호(1963.1.29) 제35조, 국가제약위원회 설립 및 제약시설에 관한 규정</p> <p>법률 제45호(2001.8.7) 제11조 및 제20조, 화학자</p> <p>법률 제4호(1956.1.23) 제5조, 기술위원회 설립 및 이·미용사 업무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호(1963.1.31) 제2조에 의하여 개정</p> <p>법률 제15호(2003.1.22) 제4조 및 제5조, 정형외과적 기술 및 외상학</p> <p>결의안 제3호(2004.8.26) 제5조, 의학물리학</p> <p>법률 제19호(2007.6.5) 제17조, 수상인명 구조</p> <p>법률 제49호(2007.12.5) 제3조, 지역사회 개발자</p> <p>법률 제31호(2008.6.3) 제5조, 응급의료 기사 및 전문가</p> <p>법률 제28호(2008.5.22) 제3조, 조기자극 및 가족지향</p> <p>법률 제53호(2008.8.5) 제5조, 호흡치료사</p> <p>법률 제17호(2009.2.12) 제5조, 생물학</p>
--

	<p>법률 제52호(2009.9.18) 제5조, 노인학 기술 학위</p> <p>법률 제51호(2003.7.14) 제5조, 핵의학 전문가</p> <p>행정부령 제82호(2008) 제89조, 관광 안내 관련</p>
<p>유보내용</p>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이 유보에 대한 조치에 열거된 직업을 수행하는 인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p>2. 상호주의 또는 거주 요건은 적절하게 적용된다.</p> <p>3. 전문 관광 서비스를 제외하고, 관광객 안내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파나마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p>

23.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서비스 - 건축가 및 엔지니어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15호(1959.1.26)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24조 법률 제53호(1963.2.4) 제4조 법령 제257호(1965.9.3)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21호(2007.6.20) 제1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엔지니어 및 건축가 기술위원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만이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그러한 자격증을 다음에게 부여할 수 있다.</p> <p>가. 파나마 국민</p> <p>나. 파나마 국민과 결혼한 외국 국민 또는 파나마 국민인 자녀의 부모인 외국 국민, 또는</p> <p>다. 파나마 국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할권 내 허가를 받은 외국 국민</p> <p>2. 기술위원회는 또한 해당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을 갖춘 파나마인이 없는 경우, 기업이 외국 국민인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와 최대 12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업은 계약 종료 시 외국 국민을 대체할 자격을 갖춘 파나마 국민을 계약 기간 동안 고용하여야 한다.</p> <p>3. 기술위원회에 등록된 기업만이 파나마에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p> <p>가. 국제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업은 파나마에 본사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p> <p>나. 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이 있는 기업에 고용된 인은 파나마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24.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17호(1991.7.9) 법률 제5호(1995.2.9) 법률 제31호(1996.2.8) 행정부령 제73호(1997.4.9) 행정부령 제21호(1996) 규정 제JD-025호(1996.12.12) 규정 제JD-080호(1997.4.10) 국가와 벨 사우스 파나마 주식회사(BSC)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30-A호(1996.2.5) 국가와 케이블 와이어리스 파나마 주식회사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309호(1997.10.24) 행정부령 제58호(2008.5.12) 국가와 디지셀 파나마 주식회사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10-2008호(2008.5.27) 국가와 클라로 파나마 주식회사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11-2008호(2008.5.27)</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이동전화 서비스는 국가가 양허를 부여한 4개 사업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된다.</p>

25.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31호(1996.2.8) 행정부령 제73호(1997.4.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 내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통신서비스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인만이 공급할 수 있다.

26. 분야	무역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
하위분야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한 음료 제공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55호(1973.7.10) 법률 제5호(2007.1.11) 행정부령 제26호(2007.7.1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최근 공식 인구 조사에 따라, 파나마 내 어떠한 지역의 기존 술집 수가 인구 1,000명당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 내 술집 운영에 대한 허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27. 분야	레크리에이션서비스
하위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1972) 제297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파나마 정부만이 파나마에서 사행성 게임 또는 그 밖의 도박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p>

28. 분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파나마 공화국 재정법 제301조, 법률 제8호(1956.1.27)에 의거 승인, 법률 제20호(1994.8.11)에 의거 수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 정부만이 파나마에서 우편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29. 분야	항구 및 공항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7호(1998.2.10) 법률 제23호(2003.1.2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 정부의 행정부는 국가 항구 및 공항을 위한 양허의 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양허권자에게 파나마 내에서 법률대리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속서 II

파나마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파나마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파나마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마.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될 것이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파나마는 다음을 양해한다.

파나마 관할권 수역에서의 어업 및 관련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부속서 I 및 II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

1.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또는 보육.

2. 분야	원주민 집단 및 소수 민족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자 및 그 투자, 또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 또는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집단에 부여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는 세로 콜로라도(Cerro Colorado) 또는 노베 부글레 지역(Ngobe Bugle Region) 및 그 밖의 지역 관할권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광산의 탐사 및 개발을 개시, 촉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법령 제30호(2011.2.22)의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포함한다.

3. 분야	파나마 운하 관련 사안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1.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및 외국인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환지역의 관리, 행정, 운영, 유지, 보존, 현대화, 이용, 개발 또는 소유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파나마 운하는 적절한 수로, 그리고 정박지, 부두 접안지 및 입구, 육지 및 해양, 호수 및 하천, 수문, 부수 댐, 부두 및 수해방지구조물을 포함한다. 3. 경제재정부 반환자산관리국(구 대양간 지역사업청)의 관리 하에 있는 반환지역은 1977년 「파나마 운하 조약」 및 그 부속서(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파나마 공화국으로 반환된 토지, 건물 및 시설과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한다.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다음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서비스 제공</p> <p>나.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p> <p>다. 그러한 지분 또는 물품 소유자의 기술적 역량, 재정적 역량 및 경험, 그리고</p> <p>라. 그 결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p> <p>2. 그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파나마는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5.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거주, 등록 또는 그 밖의 현지주재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또는 파나마 법 및 사적인 계약상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정보증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어업 및 어업 관련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파나마 관할권 내 수역에서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투자, 소유 또는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2.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된 중미 통합 체제의 모든 협정에 따라 중미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3.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p> <p>라. 철도 운송</p>

8.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1. 파나마는 정기 여객운송, 비정기 여객운송, 운영자를 포함하는 상업용 화물차량 임대 서비스 및 버스터미널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및 투자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파나마 국경 내의 육로를 통한 카보타지는 국내 운송업체들을 위하여 유보된다.

9.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u></p> <p>파나마는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국내 규정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파나마는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고 그 조치가 다음과 같다는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가.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p> <p>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한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p> <p>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p>

부속서 III

파나마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파나마 유보목록은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파나마의 기존 조치의 유보목록을 규정한다.

- 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 나. 제11.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마.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제1항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의 유보목록에 대한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유보목록의 항목을 해석하는 경우, 비합치 조치 목록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비합치 조치가 취해지는 제11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 또는 제11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파나마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서비스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52호(2008.4.30) 제53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의 파나마 지점은 최소 2명의 일반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2명 모두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또한 2명의 대리인 중 1명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사 보험사의 관리자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국경 간 무역(제11.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12호(2012) 제56조, 제58조, 제153조, 제166조, 제177조 및 제181조
유보내용	<p>파나마 공화국에 주소지를 둔 인은 파나마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보험사에게 파나마에 소재한 모든 재산 및 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험증권이 파나마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보험사로 부터 취득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보험재보험감독원은 그 보험증권을 해외에서 취득하도록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부에 그 승인에 대하여 기록할 것이다.</p> <p>파나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한국 국민 및 한국 기업이 부속서 11-가(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부속서 제1항다호는 파나마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그 부속서 제1항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p> <p>부속서 I의 파나마 유보목록 1번 항목에 명시된 개인만이 파나마에서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p> <p>그러한 기업의 법적 대리인은 파나마에서 보험중개인으로 면허를 취득한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재보험 또는 인수업체 재보험 관리자 재보험 중개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63호(1996.9.19) 제10조
유보내용	재보험업에 종사하도록 승인 받은 회사는 최소 2명의 일반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2명 모두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또한, 2명의 대리인 중 1명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은행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90-LEG호(2002.4.9) 제4조 법률 제56호(1995.12.27) 제111조
유보내용	과나마에서 설립되고 보험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 및 은행만이, 각 경우에 맞게, 정부조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보증증서 또는 은행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